2023 상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 정 기 회 의 -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 서울대학교 39동 B103호 (BK홀)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당신의 꿈에 날개를, <드림>

2023 상반기 공과대학학생회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자료집

목 차

▶ 통과안건

- 1.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서
- 2. 대의원 확정
- 3. 공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 4. 공학대회 안건 채택
- 5. 회의 진행 순서 통과

▶ 보고안건

-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 2.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 4.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이준아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활동 계획

▶ 논의 및 의결안건

- 1.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구성 축소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 2. 학부/과/전공/반학생회 대의원 구성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 3. 연합전공생의 학생회원권 부여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 4. 기타 학생회칙 개정의 건

▶ 심의 안건

- 1. 2022년 2기(2022.06.15.~2022.11.30.) 공과대학 학생회 결산(안)
- 2. 2023년 1기(2022.12.01.~2023.06.14.) 공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결산(안)

▶ 별첨

- 1. 2022년 2기 통장 세부내역 (00통장)
- 2. 2022년 2기 통장 세부내역 (74통장)
-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세부내역 (74통장)

▶ 부록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2022.10.07.)

I. 통과 안건

- 1.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서
- 2. 대의원 확정
- 3. 공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 4. 공학대회 안건 채택
- 5. 회의진행 순서 통과

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공학대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의원 확정

단위	인원수
학생회장단	2명
공과대학 학생회장	나세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박선호
건축학과	5명
건축학전공 회장	정지은
건축학전공 대표	김유정
건축공학전공 대표	윤지영
2학년 대표	최은수
1학년 대표	김정윤
건설환경공학부	5명
학생회장	권윤경
부학생회장	류수진
부학생회장	유승현
2학년 대표	지영석
1학년 대표	육지훈
광역반	1명
임시 대표	유지호
기계공학부	8명
학생회장	김대한
부학생회장	민윤정
2학년 A반 대표	정진호
2학년 B반 대표	정금강
2학년 C반 대표	이유창
1학년 A반 대표	이한결
1학년 B반 대표	김유민
1학년 C반 대표	이제현

산업공학과	7명
학생회장	이송이
부학생회장	조건희
부학생회장	안현민
4학년 대표	윤승혁
3학년 대표	오수빈
2학년 대표	박석우
1학년 대표	이승효
에너지자원공학과	4명
학생회장	전영진
부학생회장	신원재
2학년 대표	박세준
1학년 대표	박주언
원자핵공학과	6명
학생회장	신의식
부학생회장	손동현
4학년 대표	이진원
3학년 대표	김동민
2학년 대표	박찬서
1학년 대표	김동하
재료공학부	5명
학생회장	김경오
부학생회장	김태규
부학생회장	김의현
2학년 대표	박세은
1학년 대표	박병관

전기정보공학부	18명
학생회장	서지훈
부학생회장	송현석
4학년 R반 대표	한지유
4학년 룰루반 대표	장원재
4학년 랄라반 대표	정예원
4학년 C반 대표	박서연
3학년 R반 대표	이송은
3학년 룰루반 대표	박수완
3학년 랄라반 대표	송예은
3학년 C반 대표	이강록
2학년 R반 대표	김태훈
2학년 룰루반 대표	김나림
2학년 랄라반 대표	김하준
2학년 C반 대표	김승현
1학년 R반 대표	유현준
1학년 룰루반 대표	이준표
1학년 랄라반 대표	김석환
1학년 C반 대표	송기원
조선해양공학과	5명
학생회장	구준영
4학년 대표	김대상
3학년 대표	임재하
2학년 대표	노혜빈
1학년 대표	장세빈

컴퓨터공학부	6명
학생회장	문동휘
부학생회장	한관엽
4학년 대표	이수성
3학년 대표	류지민
2학년 대표	김령교
1학년 대표	박하준
항공우주공학과	4명
학생회장	이태호
부학생회장	이동규
2학년 대표	이남용
1학년 대표	한진우
화학생물공학부	7명
학생회장	한정우
부학생회장	유은서
2학년 A반	김관우
2학년 B반	박정환
2학년 C반	최영인
1학년 Acid반	김민주
1학년 Base반	김형진
계	83명

공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1조 (시행세칙)

- ①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 제3장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공학대회")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본 시행세칙은 공학대회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효된다.
- ③ 본 시행세칙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본 시행세칙은 공학대회 회기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 ⑤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 (회의진행과 관련된 원칙)

- ① 공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 1. 회의공개의 원칙 : 안건 공고, 방청 공개, 공개토론, 공개표결, 회의기록 공표를 실 시한다. 단, 회원 징계에 대한 의사 진행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2. 발언자유의 원칙 : 공학대회에서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 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 을 제출하여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 3. 다수결의 원칙
 - 4.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 5. 일의제의 원칙 :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심의하지 않는다. 즉, 회의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 토론과 의결을 거친다. 단,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6. 일사부재의의 원칙 :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단,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왜곡이 생긴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다. 번 안이 통과되면 다시 표결에 부친다.
- ② '회의는 형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회의에서 찬반만 표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회의에서 제기할 내용에 대한 다른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사전 준비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학대회는 결정의 자리이기에 자유토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제3조 (회의용어)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회기(會期)"란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2. "개회(開會)"란 회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 3. "개의(開議)"란 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개회 후 회순 중의 '논의 및 의결안건'에서 의장이 안건 상정으로써 개의하여 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은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안의 경우 '개의'를 제한한다.
 - 4. "폐회(閉會)"란 회의를 마침을 말한다.
 - 5. "산회(散會)"란 폐회 혹은 휴회 후 대의원의 해산을 공고함을 말한다.
 - 6. "휴게(休憩)"란 하루 중 잠깐 쉬는 것을 말한다.
 - 7. "정회(停會)"란 하루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정회 선포 시, 대의원들은 회의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8. "휴회(休會)"란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을 말한다.
 - 9. "속개(續開)"란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함을 말한다.
 - 10. "독회(讀會)"란 신중을 요하거나 복잡한 의안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의안에 대해서 제1독회에서 의안의 발제와 질의를 다루고, 제2독회에서 제1독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안을 축조심의 및 수정을 하고, 제3독회에서는 총괄심의와 의안에 대한 채택을 하여 이후에 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독회 사이에 휴게하는 것이 보통이다.
 - 11. "발언권(發言權)"이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12. "의결권(議決權)"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 (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구분된다.

의안(議案)은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으로서 회순 중에서는 논의 및 의결안건을 지칭한다.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에 상정된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이 아니다. 의안은 제출되는 안건과 달리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반대/기권의 표결로 공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안은 가장 먼저 발의된 의안이다.
 - 2. 수정안은 원안을 추가 . 삭제 . 변경한 의안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 3. 이견안은 동일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이다.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제5조 (발언)

-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의장은 신상발언, 규칙발언, 의사진행발 언, 질문발언, 찬반발언의 순서로 발언권을 주도록 한다.
- ②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 1. 신상발언 : 자신의 신상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이다. 속기가 자신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다른 대의원이 왜곡하여 발언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2. 규칙발언 : 회의 진행이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 공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 거를 들어 하는 발언이다.
 - 3.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 4. 질문발언 : 회의운영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이다.
 - 5. 찬반발언 :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발언이다.
- ③ 발언자는 소속, 성명, 발언의 종류, 발언의 요지를 먼저 밝히고 부연설명을 한다.
- ④ 발언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제안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 1. 안건에 대한 발제는 20분 이내로 한다.
 - 2.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한다.
 - 3. 기타 발언은 3분 이내로 한다.
- ⑤ 발언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 ⑥ 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한한다.

제6조 (의장 및 의사조정위원회)

- ①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권한을 갖는다.
- ② 의장이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의의 유무를 물었을 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이의를 표명하면 의장은 표결에 부쳐야한다.
- ③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휴게를 선포하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 ④ 의장은 회칙개정시 '개정', '신설', '문구수정', '삭제'와 날짜를 표기하여 폐회 후 2일 내회칙 개정본을 작성 . 공고한다.
- ⑤ 의장은 공학대회 불참, 지각, 조퇴 대의원 명단을 조사하고, 폐회 후 3일 내에 해당 대의원이 사유를 밝힌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첨부하여 폐회 후 5일 내에 불참, 지각, 조퇴 대의원 명단을 대자보 혹은 온라인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순서)

일반적인 회순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 1. 개회선언 (재적대의원 및 출석대의원 확인)
- 2. 대의원 확정 (대의원 추가 및 대행의 승인) : 재적대의원이 아니나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운영위

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해당 공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 3.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 4. 보고안건
- 5. 인준 안건
- 6. 논의 및 의결안건
- 7. 심의 안건 (예·결산)
- 8. 기타 안건 (결의문, 선언문 통과 등)

제8조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 ①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에서 채택할 안건 및 회의 순서가 확정된다.
- ②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에서 안건 채택에 대한 기각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이후의 회순에 대한 변경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분할처리 할 수 있다. 이에 의장은 안건을 축조심의(逐條審議. 조항마다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세칙 전면개정을 다룰때 활용한다)하거나, 여러 조항을 합하거나, 축소심의(縮小審議.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방식을 표결한다.

제9조 (안건제출, 의안발의, 안건상정)

- ①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기구는 공학 대회에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안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전까지,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 ③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 건은 운영위원회나 다음 공학대회로 이월한다.
- ④ 대의원은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
 - 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 ⑤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은 의장이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 ⑥ 발의에 의한 의안의 상정 순서는 각 호에 따른다.
 - 1.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을 상정한다.
 - 2.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휴게를 선언하고 각 의안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단일수 정안을 작성하여 단일수정안을 상정한다. 만약 단일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는 원안과 이견안을 함께 묶어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원안과 이견안을 선택표결에 부친다.

제10조 (안건 발제 및 질의응답)

- ① 안건은 상정된 후에 발제 및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 ③ 질의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질의종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 보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한다. 단, 질의가 계속되더라도 질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 정될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질의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1조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

- ① 찬반토론은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動議)"란 찬반의 논지가 서로 헛돌지 않도록 앞서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발언하는 토론 방식을 말한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은 그 의견을 기각할 수 있다.
- ② 발제자는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 전에 그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 ③ 토론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한다. 단, 토론이 계속 되더라도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토론종결 여부를 표결한 다.

제12조 (표결)

- ①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대의원은 거수 혹은 구두로 표결한다. 단, 의장이 이의를 물었을 때, 이의가 없어 대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표결을 박수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인준 안건, 심의 안건의 부결은 해당 안건을 다시 작성하여 다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이다.
- ③ 찬성, 반대, 기권에 표결한 각 대의원 명단을 각 집계 때마다 속기한다. 대의원은 표결내용과 함께 단위명을 말하여야 하고 의장은 속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온라인 플랫폼으로 표결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예 . 결산 심의에 관한 조치)

- ① 심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공학대회는 표결로써 예 . 결산 금액을 삭감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표결 방법의 구성은 의장의 직권에 따른다.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단위는 처리 후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결산안 발제자는 결산 후 잔액의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③ 의장은 심의안건 발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의원 동의하에 안건 순서 조정,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학대회 안건 채택

▶ 보고 안건

-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 2.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 4.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인준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활동 계획

▶ 논의 및 의결안건

- 1.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구성 축소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 2. 학부/과/전공/반학생회 대의원 구성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 3. 연합전공생의 학생회원권 부여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 4. 기타 학생회칙 개정의 건

▶ 심의 안건

- 1. 2022년 2기(2022.06.15.~2022.11.30.) 공과대학 학생회 결산(안)
 - **별첨 1**. 2022년 2기 통장 세부내역 (00통장)
 - **별첨 2**. 2022년 2기 통장 세부내역 (74통장)
- 2. 2023년 1기(2022.12.01.~2023.06.14.) 공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결산(안)
 - 별점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세부내역 (74통장)

회의진행 순서 통과

▶ 보고 안건

5

-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 2.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 4.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인준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활동 계획

▶ 논의 및 의결안건

- 1.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구성 축소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 2. 학부/과/전공/반학생회 대의원 구성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 3. 연합전공생의 학생회원권 부여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 4. 기타 학생회칙 개정의 건

▶ 심의 안건

- 1. 2022년 2기(2022.06.15.~2022.11.30.) 공과대학 학생회 결산(안)
 - **별첨 1**. 2022년 2기 통장 세부내역 (00통장)
 - **별첨 2.** 2022년 2기 통장 세부내역 (74통장)
- 2. 2023년 1기(2022.12.01.~2023.06.14.) 공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결산(안)
 - 별점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세부내역 (74통장)

Ⅱ. 보고 안건

-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 2.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 4.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회 구성

<표 1-1> 학생회장단 구성

직위	성명	소속	학번
학생회장	나세민	항공우주공학과	21
부학생회장	박선호	재료공학부	20

<표 1-2> 1기¹⁾ 집행위원장단 및 팀장단 구성

직위	성명	소속	학번
집행위원장	서연우	건설환경공학부	20
부집행위원장	조예나	컴퓨터공학부	21
D팀 팀장	김재완	기계공학부	20
D팀 부팀장	이정웅	건설환경공학부	22
R팀 팀장	류한나	에너지자원공학과	21
R팀 부팀장	이송이	산업공학과	21
E팀 팀장	위예진	컴퓨터공학부	22
E팀 부팀장	송현석	전기정보공학부	22

<표 1-3> 1기 집행위원회 구성

소속 팀	성명	소속	학번
D팀	김경오	재료공학부	21
D팀	김의현	재료공학부	22
D팀	오동호	건설환경공학부	21
D팀	윤태현	기계공학부	22
D팀	이석현	건설환경공학부	20
R팀	김나연	전기정보공학부	22
R팀	문건우	화학생물공학부	21
R팀	손예훈	화학생물공학부	21

^{1) 1}기: 2022.12.01.~2023.03.30. 동안 활동

R팀	지영석	건설환경공학부	22
R팀	채정범	기계공학부	20
E팀	김도근	전기정보공학부	22
E팀	박수완	전기정보공학부	21
E팀	박지민	기계공학부	22
E팀	임호준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태규	재료공학부	21
디자이너	민소은	조선해양공학과	22
디자이너	정진용	원자핵공학과	21

<표 1-4> 2기²⁾ 집행위원장단 및 팀장단 구성

직위	성명	소속	학번
집행위원장	조예나	컴퓨터공학부	21
D팀 팀장	김재완	기계공학부	20
D팀 부팀장	이정웅	건설환경공학부	22
R팀 팀장	지영석	건설환경공학부	22
E팀 팀장	박찬준	재료공학부	22
E팀 부팀장	김도근	전기정보공학부	22
A팀 팀장	김대현	원자핵공학과	22
A팀 부팀장	김의현	재료공학부	22
M팀 팀장	박수완	전기정보공학부	21

<표 1-5> 2기 집행위원회 구성

소속 팀	성명	소속	학번
D팀	김은수	전기정보공학부	23
D팀	양문용	건설환경공학부	23
D팀	육지훈	건설환경공학부	23
D팀	윤태현	기계공학부	22
D팀	조성원	에너지자원공학과	23
R팀	김나연	전기정보공학부	22
R팀	류한나	에너지자원공학과	21
R팀	손예훈	화학생물공학부	21

^{2) 2}기: 2023.04.01.~2023.07.31. 활동 예정

R팀 이송이 산업공학과 21 R팀 채정범 기계공학부 20 R팀 해정민 건설환경공학부 23 E팀 김규태 재료공학부 23 E팀 김주영 광역반 23 E팀 김주영 광역반 23 E팀 김지이 광역반 23 E팀 이민창 항공우주공학과 23 E팀 이수민 재료공학부 22 E팀 정승현 광역반 23 E팀 정사경 재료공학부 22 A팀 주대한 건설환경공학부 23 A팀 이석현 건설환경공학부 20 A팀 이현택 재료공학부 22 A팀 가찬미 광역반 23 A팀 이현택 재료공학부 22 A팀 차찬미 광역반 23 M팀 기계공학부 23 M팀 김경오 재료공학부 21 M팀 서취곤 재료공학부 21 M팀 서취곤 재료공학부 21 M팀 수위한 건설환경공학부 23 M팀 수위한 건설환경공학부 23 MI 가이룰라 성티 가이룰라 성임 자료공학부 21 MI 가이를라 성임 자료공학부 21 MI 가이를 가입되어 가게공학부 23 MI 가이너 김서진 기계공학부 23 디자이너 김언재 기계공학부 22 디자이너 김연재 기계공학부 22 디자이너 김대자우 전기정보공학과 23				
REI 허정민 건설환경공학부 23 EEI 김규태 재료공학부 23 EEI 김준영 광역반 23 EEI 김지이 광역반 23 EEI 이민창 항공우주공학과 23 EEI 이수민 재료공학부 22 EEI 정승현 광역반 23 EEI 정재경 재료공학부 22 AEI 이석현 건설환경공학부 20 AEI 이한택 재료공학부 22 AEI 차찬미 광역반 23 AEI 가이룰라 건설환경공학부 23 MEI 건경오 재료공학부 21 MEI 서휘곤 재료공학부 23 MEI 서취곤 재료공학부 23 MEI 이민호 에너지자원공학과 23 MEI 정진혁 광역반 23 디자이너 김서진 기계공학부 22 디자이너 김대우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대우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대주 전기정보공학부 22 <	R팀	이송이	산업공학과	21
E目 김규태 재료공학부 23 E目 김준영 광역반 23 E目 김지이 광역반 23 E目 이민창 항공우주공학과 23 E目 이수민 재료공학부 22 E目 정상현 광역반 23 E目 정재경 재료공학부 22 A目 우태헌 건설환경공학부 20 A目 이한택 재료공학부 22 A目 가하를라 센티 강역반 23 A目 가하를라 센티 건설환경공학부 23 M目 김경오 재료공학부 21 ME 서취곤 재료공학부 23 ME 수지호 광역반 23 ME 이민호 에너지자원공학과 23 ME 정진혁 광역반 23 대기계공학부 23 23 23 다자이너 김서진 기계공학부 22 디자이너 김대우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대규 전기정보공학부 21	R팀	채정범	기계공학부	20
E目 김준영 광역반 23 E目 김지이 광역반 23 E目 이민창 항공우주공학과 23 E目 이수민 재료공학부 22 E目 정승현 광역반 23 E目 정재경 재료공학부 22 A目 우태헌 건설환경공학부 20 A目 이현택 재료공학부 22 A目 이한택 재료공학부 23 A目 차찬미 광역반 23 M目 김경오 재료공학부 21 ME 서취곤 재료공학부 23 ME 유지호 광역반 23 ME 이민호 에너지자원공학과 23 ME 정진혁 광역반 23 디자이너 김서진 기계공학부 23 디자이너 김대우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태규 재료공학부 21	R팀	허정민	건설환경공학부	23
E目 김지이 광역반 23 E目 이민창 항공우주공학과 23 E目 이수민 재료공학부 22 E目 정승현 광역반 23 E目 정재경 재료공학부 22 A目 우태헌 건설환경공학부 20 A目 이현택 재료공학부 22 A目 가하를라 접티 건설환경공학부 23 A目 가이룰라 접티 건설환경공학부 23 M目 김경오 재료공학부 21 M目 서취곤 재료공학부 23 M目 유지호 광역반 23 M目 이민호 에너지자원공학과 23 M目 정진혁 광역반 23 디자이너 김서진 기계공학부 22 디자이너 김재우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래규 재료공학부 21	E팀	김규태	재료공학부	23
E팀 이민창 항공우주공학과 23 E目 이수민 재료공학부 22 E目 정승현 광역반 23 E目 정재경 재료공학부 22 A目 우태헌 건설환경공학부 20 A目 이현택 재료공학부 22 A目 가하미 광역반 23 A目 차찬미 광역반 23 M目 김경오 재료공학부 21 M目 서취곤 재료공학부 23 M目 유지호 광역반 23 M目 이민호 에너지자원공학과 23 M目 정진혁 광역반 23 디자이너 김서진 기계공학부 22 디자이너 김재우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태규 재료공학부 21	E팀	김준영	광역반	23
E目이수민재료공학부22E目정승현광역반23E目정재경재료공학부22A目우대헌건설환경공학부23A目이석현건설환경공학부20A目이현택재료공학부22A目차찬미광역반23A目카이룰라 셉티건설환경공학부23M目김경오재료공학부21M目서휘곤재료공학부23M目유지호광역반23M目이민호에너지자원공학과23M目정진혁광역반23디자이너김서진기계공학부23디자이너김인재기계공학부22디자이너김재우전기정보공학부22디자이너김태규재료공학부21	E팀	김지이	광역반	23
E目 정승현 광역반 23 E目 정재경 재료공학부 22 A目 우태헌 건설환경공학부 23 A目 이석현 건설환경공학부 20 A目 이한택 재료공학부 22 A目 차찬미 광역반 23 A目 차한미 광역반 23 M目 김경오 재료공학부 21 M目 서휘곤 재료공학부 23 M目 유지호 광역반 23 M目 이민호 에너지자원공학과 23 대자이너 김서진 기계공학부 23 디자이너 김연재 기계공학부 22 디자이너 김재우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태규 재료공학부 21	E팀	이민창	항공우주공학과	23
E目정재경재료공학부22A目우태헌건설환경공학부23A目이석현건설환경공학부20A目이현택재료공학부22A目차찬미광역반23A目카이룰라 섭티건설환경공학부23M目김경오재료공학부21M目서휘곤재료공학부23M目유지호광역반23M目이민호에너지자원공학과23M目정진혁광역반23디자이너김서진기계공학부23디자이너김인재기계공학부22디자이너김재우전기정보공학부22디자이너김태규재료공학부21	E팀	이수민	재료공학부	22
A팀우태헌건설환경공학부23A目이석현건설환경공학부20A目이현택재료공학부22A目차찬미광역반23A目카이룰라 섭티건설환경공학부23M目김경오재료공학부21M目서휘곤재료공학부23M目유지호광역반23M目이민호에너지자원공학과23M目정진혁광역반23디자이너김서진기계공학부23디자이너김인재기계공학부22디자이너김재우전기정보공학부22디자이너김태규재료공학부21	E팀	정승현	광역반	23
A팀이석현건설환경공학부20A目이현택재료공학부22A目차찬미광역반23A目카이룰라 셉티건설환경공학부23M目김경오재료공학부21M目서휘곤재료공학부23M目유지호광역반23M目이민호에너지자원공학과23M目정진혁광역반23디자이너김서진기계공학부23디자이너김인재기계공학부22디자이너김재우전기정보공학부22디자이너김태규재료공학부21	E팀	정재경	재료공학부	22
A目이현택재료공학부22A目차찬미광역반23A目카이룰라 셉티건설환경공학부23M目김경오재료공학부21M目서휘곤재료공학부23M目유지호광역반23M目이민호에너지자원공학과23M目정진혁광역반23디자이너김서진기계공학부23디자이너김인재기계공학부22디자이너김재우전기정보공학부22디자이너김태규재료공학부21	A팀	우태헌	건설환경공학부	23
A팀차찬미광역반23A目카이룰라 셉티건설환경공학부23M目김경오재료공학부21M目서휘곤재료공학부23M目유지호광역반23M目이민호에너지자원공학과23M目정진혁광역반23디자이너김서진기계공학부23디자이너김인재기계공학부22디자이너김재우전기정보공학부22디자이너김태규재료공학부21	A팀	이석현	건설환경공학부	20
A팀 카이룰라 선설환경공학부 23 M팀 김경오 재료공학부 21 M팀 서휘곤 재료공학부 23 M팀 유지호 광역반 23 M팀 이민호 에너지자원공학과 23 M팀 정진혁 광역반 23 디자이너 김서진 기계공학부 23 디자이너 김대가 기계공학부 22 디자이너 김재우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태규 재료공학부 21	A팀	이현택	재료공학부	22
AE센티건설완경공학부23ME김경오재료공학부21ME서휘곤재료공학부23ME유지호광역반23ME이민호에너지자원공학과23ME정진혁광역반23디자이너김서진기계공학부23디자이너김인재기계공학부22디자이너김재우전기정보공학부22디자이너김태규재료공학부21	A팀	차찬미	광역반	23
M팀서휘곤재료공학부23M目유지호광역반23M目이민호에너지자원공학과23M目정진혁광역반23디자이너김서진기계공학부23디자이너김인재기계공학부22디자이너김재우전기정보공학부22디자이너김태규재료공학부21	A팀		건설환경공학부	23
M팀유지호광역반23M目이민호에너지자원공학과23M目정진혁광역반23디자이너김서진기계공학부23디자이너김인재기계공학부22디자이너김재우전기정보공학부22디자이너김태규재료공학부21	M팀		재료공학부	21
M팀이민호에너지자원공학과23M팀정진혁광역반23디자이너김서진기계공학부23디자이너김인재기계공학부22디자이너김재우전기정보공학부22디자이너김태규재료공학부21	M팀	서휘곤	재료공학부	23
M팀정진혁광역반23디자이너김서진기계공학부23디자이너김인재기계공학부22디자이너김재우전기정보공학부22디자이너김태규재료공학부21	M팀	유지호	광역반	23
디자이너 김서진 기계공학부 23 디자이너 김인재 기계공학부 22 디자이너 김재우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태규 재료공학부 21	M팀	이민호	에너지자원공학과	23
디자이너 김인재 기계공학부 22 디자이너 김재우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태규 재료공학부 21	M팀	정진혁	광역반	23
디자이너 김재우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태규 재료공학부 21	디자이너	김서진	기계공학부	23
디자이너 김태규 재료공학부 21	디자이너	김인재	기계공학부	22
	디자이너	김재우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기형주 에너지자워고하과 23	디자이너	김태규	재료공학부	21
	디자이너	김형준	에너지자원공학과	23
디자이너 정진용 원자핵공학과 21	디자이너	정진용	원자핵공학과	21

2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1. 중점사업

1) 2023 새내기 새로배움터 진행 (보고안건 3 참고)

2/20(월)-2/22(수) 2박 3일동안 델피노 리조트에서 2023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과(부)/반별 단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항전 형태의 열전새터/단체게임 및 과가 제창, 과별 영상 시청 프로그램부터, 공과대학 학우로서의 소속감을 증진할 수 있는 학장단 토크콘서트, 엔믹스 특별공연, 동아리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9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 공과대학 동아리 TF 개설 및 운영

제2차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치된 공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 '공과대학 동아리 TF'를 개설하였습니다. 동아리 등록 및 활동 심사 검토, 동아리 배정 공간 조정, 공과대학 대표자 회의, 동아리 공간 개선사항 발제 및 시설공사 건의, 공과대학 동아리 가등록·정식등록 등 공과대학 동아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023 교육·연구 환경개선위원회 참석

매년 초 공과대학 시설지원실에서 주관하는 교육·연구 환경개선위원회에서 특별위원으로 참석하여 학내 공간 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의제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2. 집행위원회 활동

- 1) <1기 회·집장단> 월간 문화 12월: 크리스마스 포토존 운영 크리스마스를 맞아 월간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301동 서문에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설치 하여 2주 동안 크리스마스 기간을 장식하였습니다.
- 2) <1기 회·집장단> 복수전공생·자유전공학부 전공진입생 학생회원권 부여 그동안 학생회칙 상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회원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복수전공생 및 자유전공학부 전공진입생 분들을 대상으로 회원권 신청을 받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학생회원권을 부여했습니다.
- 3) <1기 회·집장단> 제휴사업 진행

밝은눈안과, 라이브치과, 서울메디컬과 제휴를 맺어 학우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1기 회·집장단> 광역반 학생회 제반사업 진행 2023년부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새로 도입된 광역반 신입생을 위하여 신입생 환영회 를 진행하고 광역반 학생회 구성위원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구성위원회를 통하여 임시 대표 및 부대표를 선출하고, 광역반 학생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5) <1기 회·집장단> 공과대학 학생회 Notion 개설

그동안 학생회칙 및 세칙, 운영위원회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Notion 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이 운영위원원회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관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6) <1기 D팀> 학생회 카톡 채널 활성화

학생회에게 무언가 바라는 점이 있어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카카오톡 채널은 존재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를 통해 학생회 관련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드림에서는 학생회 카톡 채널에 학생회 관련 정보와 소식들을 추가하고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카카오톡 채널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7) <1기 D팀> 흡연 구역 정비를 위한 사전 수요 조사

공과대학 내부에는 사실 공식적인 흡연구역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와 상관 없이 다양한 장소에서 흡연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흡연 구역 정비를 바라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폼을 통한 흡연 구역 정비 사전 수요 조사를 함으로써 흡연 구역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8) <1기 D팀> 복학생에게 알려드림 1탄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대학교는 대부분의 활동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는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온 일명 '복학생'학우분들은 관련 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관련된 여러 소식들과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을 조사하여 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하였습니다.

9) <1기 D팀> 파이데이 행사

3/14(화) 파이데이를 맞아 공과대학 학우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인 원주율 파이를 이용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스 홍보를 인스타에 업로드하면 초코파이, 엄마 손파이, 등 과자 파이류를 지급하였습니다. 또, 부스에서 원주율 암기 대회와 원주율을 이용한 암산 대회를 진행하여 추가 파이류를 지급하고, 참여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폼 이벤트를 진행하여 3시 14분 15초에 제출한 학우들 모두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였습니다.

10) <1기 R팀> 대신 만나드림: 랩인턴/기업인턴 인터뷰

공과대학 내 인턴 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랩인턴, 기업인턴 (스타트 업, 대기업), 전문연 경험이 있으신 총 6분을 대상으로 인턴 지원 계기 및 절차, 인턴업 무, 배울 수 있는 점 등을 인터뷰하여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하였습니다. 인턴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려운만큼 '대신 만나드림' 사업을 통해관련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11) <1기 R팀> 강의실 예약제도 개선

공과대학은 함께 학습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강의실 예약제도 개선'사업에서는 강의실 예약 시스템(예약하샤)에 예약 가능한 강의실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자핵공학과 32동 건물의 4개 강의실이 예약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공과대학 학장님의 학과/학부별 강의실 1개씩은 개방할 수 있도록 개선에 힘쓰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약하샤에 등록된 강의실을 대상으로 강의실 이용 에티켓 및 QR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고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예약하샤'홈페이지 오류를 개선하였습니다.

12) <1기 R팀> 모바일 지도 업데이트 / 출입구 표지판 설치

공과대학 건물은 복잡하고 건물별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모바일 지도의 개선이 필수적이었고 지도 어플 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서울대 캠퍼스 맵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붉은광장' 위치를 추가, 34동 건물 번호 표시, 34동과 붉은광장 주변 길이 표시되지 않았던 현상 개선, 서울대 캠퍼스 맵의 편의성 증진 - 건물 클릭시 상세정보 조회, 셔틀버스 노선도 최신화, 문의하기 기능 추가)

13) <1기 E팀> 신양학술정보관 시설 개선 설문조사 진행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신양학술정보관(44-1동)의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조사 및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정리한 개선 사항들을 기획협력실에 전달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14) <1기 E팀> 월간 진로 3월: 진로탐색 멘토링 진행

공과대학 학우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직종 및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하여 소규모 그룹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행사의 경우 AI 분야와 반도체 분야의 연사 두 분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40여명의 학우분들께서 멘티로 참여해주셨습니다.

15) <2기 회·집장단> 윗공대 식당 만족도 조사 진행

윗공대 식당 개선의 일환으로 윗공대 식당(300동 푸드코트, 301동 웰스토리 식당, 302 동 생협 직영 식당)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열흘간 진행하였으며, 총 431명의 학우분 들의 응답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윗공대 식당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합함으로써 개선 방향을 확립 후 생활협동조합 사업본부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방안 시행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은 추진 과정에서 '윗공대 식당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윗공대 학과/부 대표자와 소통할 예정이며, 협의체 외에도 면담 결과 등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학우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 16) <2기 회·집장단> 월간 문화 4월: 공감 봄나들이 진행 4월을 맞아 월간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버들골에서 돗자리 대여, 솜사탕 나눔 행사 및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17) <2기 회·집장단> 교내 와이파이 (eduroam) 접속 문제 대응

교내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인 "에듀룸(eduroam)"의 접속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화 본부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과대학 내 에듀룸의 연결 문제에 대한 피해 사례를 수합하여 연결 문제 개선을 위한 정보화 본부와의 면담에서 활용하였습니다. 개선 작업 이후 파악되는 문제의 원인들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시행 예정인 무선랜 인증 장비 교체 관련하여 가장 원활하게 이용 가능한 장비 선정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18) <2기 회·집장단> 몬스터 에너지 X <드림> 중간고사 간식 행사 진행 봄 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하여 '몬스터 에너지' 협찬의 간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 다. 이틀에 걸쳐 제1공학관 1층 복도와 신양학술정보관 1층 로비 앞에서 약 450개의 몬 스터 에너지 드링크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 19) <2기 회·집장단>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대한 사실 관계 및 추후 대응 2023.04.27.에 발표된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배정 결과 발표"를 통하여 서울대학교에 약 200여 명의 정원을 가지는 '첨단융합학부'및 해당 학부 내 4개의 전공 신설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교수·교직원 인력 문제 및 기존 공과대학학과/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의 유사성 고려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공과대학 교무행정실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추후에도 공과대학 학우분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20) <2기 D팀> 월간진로 5월: 멘토링 데이 (진행 중)

공과대학에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학우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진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연사님들을 초청하여 멘토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 중순 엔지니어 하우스(310동)에서 변리사, 대기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해 계신 분들을 10~12명 정도 멘토로 초청하여 인당 6~7명 정도의 멘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방식으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21) <2기 D팀> 병역백서 (계획 중)

병역 관련 정보 혹은 대체 복무 관련 자료를 찾아보아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한 병역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여 병역 백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병과 외에도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대체 복무 관련 정보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과대학 학우분들께서 병역 관련 정보를 구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 <2기 R팀> 창업백서 배포 (진행 중)

처음 창업에 대해 고민하는 공과대학 학우들을 대상으로, 대학이 제공하는 창업 관련 정보 등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수합·정리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현재 창업지원과 관련된 정보가 산발적으로 공유되어 한 번에 접근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자하며, SNU공학컨설팅센터/서울대 창업지원단/SNU창업멘토링 등 기존의 지원 사항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23) <2기 R팀> 배리어프리 개선 사업 (계획 중)

장애인 학우들을 대상으로, 공과대학 캠퍼스 내의 일상적인 이동에 대하여 제약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배리어프리 개선 사업(경사로 설치, 점자 도입, 편의시설 여부 안내 및 피드백 등)을 계획 중입니다. 이를 위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이동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장소·시설을 파악하고, 학내 시설물 담당부서와 조율하여 이들 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가능할 시, 서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캠퍼스 개선 및 장애 학우들을 위한 정보 홍보 등을 협업할 계획입니다.

24) <2기 E팀> 월간 진로 4월: 교수님의 멘토링으로 미래를 열어라!

월간 진로 행사는 공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연사 님을 초청하여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단순 강연과 달리,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보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월간 진로 4월 행사에서는 교수님과 교수님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분들을 섭외했습니다. 컴퓨터, 전기 그리고 재료 분야의 교수님을 섭외하여 총 3부로 구성했고, 멘티 약 50명과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25) <2기 E팀> 모기 잡아드림 (진행 중)

여름 계절 300~302동에 해충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00~302동에 답사를 하며 방충망, 출입문 그리고 모기 퇴치 장비를 배치할 위치 등을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충망 재정비를 의뢰하고 살충제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충 관련 분야의 교수님께 이메일로 질의를 드려 더 좋은 방안을 찾고 학우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그 외에는 실내용 모기 퇴치기를 배치하거나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6) <2기 A팀> 월간진로 6월(대기업) (진행 중)

공과대학 학우 분들 중 대기업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자 월간진로 6월(대기업)에서는 공과대학 학우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종 중 대기업에서 실무를 맡고 계신 선배님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특히 일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진부한 진로 행사가 아닌, 분야를 세분화한 행사를 통해 학우 분들께 기업의 실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7) <2기 A팀> 월간진로 7월(유학 세미나) (진행 중)

유학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이전에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졸업을 하셔 공과대학 학우분들 중 유학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께 유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월간진로 7월(유학 세미나)에서는 해외 대학원 과정에 합격하신 선배님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과대학 학우 분들께 유학 준비 과정을 포함한 유학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 <2기 M팀> 공과대학 체육대회 (진행 중)

그동안 잘 개최되지 않았던 공과대학 모든 학부/과/반이 모여 함께 참여하는 형식의 행사에 대한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각 단위들을 4팀으로 나누어 체육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체육대회에는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과 푸드트럭 등을 기획하여 일반 학우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9) <2기 M팀> 복학생에게 알려드림 2 (계획 중)

'복학생에게 알려드림 1'사업을 계승하여 오랜만에 복학한 학우분들을 위해 그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시설, 제도,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들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하고자합니다.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1. 위원 구성

이름	소속	학번	직책	비고
박선호	재료공학부	20	준비위원장	부학생회장
서연우	건설환경공학부	20	부준비위원장	1기 집행위원장
김재완	기계공학부	20	열전새터팀장	1/2기 D팀 팀장
하호준	기계공학부	21	열전새터 부팀장	
박성민	전기정보공학부	21	단체게임팀장	
김대현	원자핵공학과	22	단체게임 부팀장	2기 A팀 팀장
지영석	건설환경공학부	22	공연팀장	2기 R팀 팀장
류한나	에너지자원공학과	21	책자팀장	1기 R팀 팀장
조예나	컴퓨터공학부	21	후원팀장	1기 부집행위원장 /2기 집행위원장
김경모	재료공학부	21	후원 부팀장	
나세민	항공우주공학과	21	안전관리팀장	학생회장
김지은	조선해양공학과	18	자문위원	前 학생회장
이수용	재료공학부	19	자문위원	前 재료 정
이창훈	항공우주공학과	17	자문위원	
조상현	항공우주공학과	18	자문위원	
강승빈	자유전공학부	21	준비위원	
경인규	기계공학부	22	준비위원	
구준영	조선해양공학과	22	준비위원	조선 정
김나연	전기정보공학부	22	준비위원	
김도영	기계공학부	22	준비위원	
김민준	기계공학부	22	준비위원	
김서현	기계공학부	21	준비위원	
김성규	재료공학부	22	준비위원	
김수린	항공우주공학과	22	준비위원	
김의현	재료공학부	22	준비위원	재료 부
김주현	화학생물공학부	22	준비위원	

김준휘	에너지자원공학과	22	준비위원	
김진현	항공우주공학과	20	준비위원	
김태규	재료공학부	21	준비위원	재료 부
김현우	전기정보공학부	22	준비위원	
민소은	조선해양공학과	22	준비위원	
민윤정	기계공학부	21	준비위원	기계 부
박석우	산업공학과	22	준비위원	
박세준	에너지자원공학과	22	준비위원	
박소정	전기정보공학부	18	준비위원	
박준형	기계공학부	21	준비위원	
박지민	기계공학부	22	준비위원	
손예훈	화학생물공학부	21	준비위원	
송현석	전기정보공학부	22	준비위원	전기 부
신승진	건설환경공학부	22	준비위원	
신원재	에너지자원공학과	22	준비위원	에자 부
신정하	기계공학부	22	준비위원	
심승언	에너지자원공학과	21	준비위원	
안현민	산업공학과	22	준비위원	산공 부
엄세미	전기정보공학부	22	준비위원	
엄준용	기계공학부	22	준비위원	
오동호	건설환경공학부	21	준비위원	
윤예성	항공우주공학과	22	준비위원	
윤지민	건설환경공학부	22	준비위원	
이강준	항공우주공학과	22	준비위원	
이남용	항공우주공학과	22	준비위원	
이동규	항공우주공학과	22	준비위원	항공 부
이석현	건설환경공학부	20	준비위원	
이송이	산업공학과	21	준비위원	산공 정
이승현	기계공학부	22	준비위원	
이용준	원자핵공학과	22	준비위원	
이태호	항공우주공학과	22	준비위원	항공 정
전영진	에너지자원공학과	22	준비위원	에자 정
전준아	컴퓨터공학부	22	준비위원	
전해린	산업공학과	22	준비위원	

정유민	항공우주공학과	22	준비위원	
조한기	건설환경공학부	22	준비위원	
최현수	전기정보공학부	22	준비위원	
한정우	화학생물공학부	22	준비위원	화생 정
홍성현	전기정보공학부	22	준비위원	

2. 활동 내용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는 2023 공과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기구로서, 4년만에 진행되는 대면 숙박 새터를 성공적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입학 후 단과대 규모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는 만큼 공대 학우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학과(부)/반 단위의 단합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래에서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 자합니다.

1) 열전새터 진행

학과(부)/반의 대항전 형태인 열전새터 게임을 통하여 각 학과(부)/반별 단합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단체미션, 릴레이미션, 왕피구, 종합 퀴즈로 하여 총 4가지의 게임을 진행하며 다양한 학과(부)/반의 학우 분들을 접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기획하였습니다.

2) 단체게임 진행

한쪽에서 열전새터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의 절반이 한 자리에 모여 골든벨 문제를 푸는 형식의 단체게임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대한 지식을 담은 문제부터 공과대학의 특성을 살린 수학 및 물리 문제들까지 준비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지식의 배움 및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동아리 공연 진행

밴드, 댄스, 사물놀이,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새터 진행 1~2개월 전에 공연 동아리를 모집한 후, 각 동아리가 최적의 환경에서 공연을 진행할수 있도록 공연팀에서 기획사 및 각 동아리 대표자와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공연 중간에 경품 추첨을 진행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참가자분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4) 학장단 토크콘서트 및 엔믹스 특별공연 진행

공과대학 학장단께서 본 행사에 참석하여 7개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의 토크콘서 트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토크콘서트 진행 후에는 연예인(엔믹스)을 초청하여 4년 만의 대면 숙박 새터를 기념하는 특별 공연도 진행하였습니다.

5) 과가 제창 및 과별 영상 시청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과가 제창 문화를 이어가기 위하여 과가를 제창하는 시간대를 따로 마련하여 각 학과(부)/반별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과(부) 학생회의 협조를 통하여 제작된 과별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 책자 제작

신입생 참가자 분들이 입학 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교통/시설/수강신청 등의 학교생활을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입생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학교 용어 및 유용한 팁에 대한 내용 역시 담았습니다.

7) 방역 및 안전사고 대비

코로나19의 전염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각각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스태프를 별도로 두고 코로나19 확산 대비, 안전사고 발생, 이탈인원 감시, 심야시간 순찰 등의 역할을 분배하여 새터의 전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8) 기업체의 후원

한빛미디어에서 과학/IT 분야의 서적 30권과 e코인 1만원권을 열전새터/단체게임 종합 1등인 산업공학과 참가자분들에게 후원해주셨습니다. 또한, 공과대학 학생회와 제휴를 맺은 밝은눈안과 강남점에서 300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새터 1일차 저녁에는 협찬을 받은 상쾌한을, 2일차 저녁에는 몬스터 음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장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2023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회·세칙특위")는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 제16차 운영위원회(2023/3/21)의 인준으로 설치되었고, 제17차 운영위원회(3/28)에서 그 구성이 인준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회·세칙특위가 설치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6차 운영위원회 별첨 자료에서 발췌).

①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한계점 개선

지난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선거시행세칙의 허술하거나 미흡했던 부분을 검토·토론하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칙 개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② 반학생회의 복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예외 규정 신설

2022 하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광역반 개설에 대응하여 공과대학 학생회 칙 제16조, 제25조를 비롯한 다수의 조항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광역반과 같은 독립적인 반학생회와 학부/과 소속 반학생회의 대의원 구성에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어 그 구성을 정확히 명시하고 운영위원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③ 연합전공생의 학생회원권 인정 여부 검토

2022년 12월 복수전공생 및 자유전공학부 전공진입생의 학생회원권 신청 당시 공과 대학 주관 연합전공생 학우분들께서 학생회원권을 신청하며 그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5차~6차 운영위원회(각각 1/3, 1/12)의 논의를 통해 해당학우들의 학생회원권이 인정된 바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 학생회칙 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으로 그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습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정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운영위원회가 별도의 시행세칙 없이 전례에 따라 운영되었다는 점,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총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을 따랐다는 점을 바탕으로 회의운영 임시시행세칙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제2차운영위원회, 2022/12/16). 해당 임시시행세칙을 토대로 정식으로 공과대학 학생회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⑤ 이외에도 현행 학생회칙 및 부속 세칙을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할 지점들이 있다면 회·세칙특위에서 면밀히 검토 후 필요 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회·세칙특위는 목적 ①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우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대중모집을 진행하고, 회칙및 세칙 검토 경험이 있는 학우분들을 호선하여 체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회·세칙특위가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 다른 개정 목적(②~⑤)까지 논의하기에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판단하여 내부에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회·세칙특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이름	소속 단위	학번	직위	비고
01	나세민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21	위원장	공과대학 학생회장
02	박선호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0	부위원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03	신의식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21	위원	운영위원 중 선임 (원자핵공학과 학생회장)
04	한정우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22	위원	운영위원 중 선임 (화학생물공학부 학생회장)
05	박수완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1	위원*	집행위원 중 선임 (집행위원회 M팀 팀장)
06	김지은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18	위원**	외부 위원 섭외 (제34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07	이상민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17	위원**	외부 위원 섭외 (제33대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 * 일반 회·세칙특위만 참여(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미참여)
- **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만 참여(일반 회·세칙특위 미참여)

회·세칙특위는 목적 ②, ③ 및 회·세칙특위 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의제를 4번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타 회칙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개정안을 작성·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21차 운영위원회(4/25)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에서 논의하고 있는 목적 ①에 대한 개정과 회·세칙특위에서 시간 부족으로 다루지 못했던 목적 ④, ⑤에 대한 개정은 시간 여유를 두어 충분히 논의 후 개정될 수 있도록 하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로 발의를 연기하였습니다.

Ⅲ. 인준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활동 계획

사업명	월간 문화 12월: 크리스마스 포토존
취지 및 목표	크리스마스를 맞아 301동 서문에 학우분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크리스 마스 포토존을 설치함.
담당 국	1기 회·집장단
시기	12월
세부 계획	12월 1주차: 월간 문화 12월 준비 12월 2주차: 포토존 물품 구매 및 설치
예산 항목	포토존 설치를 위한 물품: 90,000

사업명	학생회 카톡 채널 활성화 및 홍보
취지 및 목표	공대학생회 카톡 채널 활성화를 통해 학우들이 불편함을 보다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자 함
담당 팀	1기 D팀
시기	1-3월
세부계획	1-2월: 활성화 및 세팅 3월: 홍보 및 이벤트 진행
예산 항목	상품비 3등: 28,200 상품비 2등: 28,770 상품비 1등: 27,900 메시지 발송비: 15,000 포스터 인쇄: 8,400 * 근장비: 23,400

사업명	흡연 구역 정비를 위한 사전 수요 조사
취지 및 목표	본격적 흡연 구역 정비 이전에 학우들의 수요를 확인하고자 함
담당 팀	1기 D팀
시기	2월
세부계획	2월: 설문조사 시행 차후 개선 방향성 논의 예정
예산 항목	추첨 상품 비용: 84,600

사업명	복학생에게 알려드림 1 탄
취지 및 목표	복학한 학우들에게 학교의 변화 내용을 정리해주어, 편의를 제공
담당 팀	1기 D팀
시기	12-2월
세부계획	1월 2주차: 세부 주제 브레인스토밍, 피드백 1월 3주차: 세부 주제 확정 2월 1주차: 내용 조사 2월 2주차: 내용 작성 및 피드백 2월 3주차: 디자인 및 배포
예산 항목	없음

사업명	파이데이 행사
취지 및 목표	3/14 파이데이를 맞아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 마련
담당 팀	1기 D팀
시기	3월
세부계획	3월 초: 준비 3/14: 행사 진행
예산 항목	현수막: 40,000 X배너: 28,300 칠판: 38,000 공학용 계산기: 160,000 스타벅스 상품권(구글폼): 57,890 스타벅스 상품권(참여자): 27,040 파이류(총 4회 구입): 106,180 * 근장비: 212,480

사업명	대신 만나드림: 랩인턴/기업인턴 인터뷰
취지 및 목표	랩인턴 또는 기업인턴 경험 공유
담당 팀	1기 R팀
시기	2-3월
세부계획	2월 1-2주차: 폼 수합 + 인터뷰이 찾기 2월 3주차-3월 1주차: 인터뷰 기간 및 원고초고 마감 3월 2주차: 피드백 및 원고수정 3월 4주차: 카드뉴스 배포
예산 항목	인터뷰이 사례비 및 간식비용: 175,800 * 근장비: 175,800

사업명	강의실 예약제도 개선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내 공간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예약하샤' 안내 및 강의실 확충
담당 팀	1기 R팀
시기	1-2월
	1월 1주차: 예약하샤 사용법 학습 및 등록강의실 조사
	1월 2주차: 공간 조사 및 과사 문의
세부계획	1월 3-5주차: 과사/시설에 예약하샤 등록 문의
	2월 1주차: 예약하샤 가이드 마감
	2월 2-4주차: 강의실별 안내문 부착 및 카드뉴스 배포
예산 항목	스티커 제작/인쇄비용: 55,700
	* 근장비: 55,700

사업명	모바일 지도 업데이트 / 출입구 표지판 설치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내 건물 층수 혼동 및 길을 찾는 데 어려움 해소
담당 팀	1기 R팀
시기	1-2월
세부계획	1월 1주차: 모바일 지도 개선요소 조사 1월 2주차: 건물 편의시설 조사 마감 1월 3주차-2월 1주차: 지도개선 요청 및 피드백
예산 항목	X배너 인쇄 비용: 39,600 * 근장비: 39,600

사업명	신양학술정보관 시설 개선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신양학술정보관(44-1동)의 시설 개선 및 편의성 향상
담당 국	1기 E팀
시기	1-2월
세부 계획	1월 1-2주차: 신양학술정보관 답사 문항 선정 및 답사 진행 1월 3-4주차: 신양학술정보관 답사 내용 바탕으로 설문 제작 및 배포 2월: 설문 내용 정리 및 개선 사항 정리, 개선 사항 기획협력실에 전달
예산 항목	상품 비용 50,000 * 근장비: 50,000

사업명	월간 진로 3월: 진로탐색 멘토링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학우분들께 현직자와의 멘토링 기회 제공
담당 국	1기 E팀
시기	2-3월
세부 계획	2월 1-2주차: 주제 선정 및 연사 섭외 진행. 2월 3-4주차: 행사 홍보 및 스태프 모집. 3월 1-2주차: 행사 최종 점검 및 행사 진행.
예산 항목	연사 섭외 비용: 600,000 참가자 간식 비용: 40,320

사업명	월간 문화 4월: 공감 봄나들이
취지 및 목표	4월을 맞아 학우분들이 봄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돗자리 대여, 솜사탕 나눔 행사 및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함.
담당 국	2기 회·집장단
시기	4월
세부 계획	3월 4주차: 월간 문화 행사 4월 준비 3월 5주차: 행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 4월 1주차: 부스 설치 및 행사 진행
예산 항목	솜사탕 기계 대여, 폴라로이드 필름 및 기타 물품 구매: 307,450

사업명	윗공대 식당 만족도 조사 진행
취지 및 목표	윗공대 식당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합함으로써 개선 방향을 확립 후 생활협동조합 사업본부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방안 시행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담당 국	2기 회·집장단
시기	2월-
세부 계획	4월 2주차: 윗공대 식당(300동 푸드코트, 301동 웰스토리 식당, 302동 생 협 직영 식당)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진행 추후 윗공대 식당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윗공대 학과/부 대표자와 소통할 예정
예산 항목	경품 및 인쇄비용: 150,000

사업명	월간 진로 5월: 멘토링 데이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재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월간진로 5월을 기획
담당 국	2기 D팀
시기	5/18
세부 계획	5월: 장소 섭외 완료. 현재 각 학과/부 교수님 통하여 연사 섭외 진행 중. 5/18: 행사 진행 예정
예산 항목	식사, 연사비, 기념품, 장소 대여비, 등: 7,500,000 * 근장비: 1,000,000 / 행정실 지원금: 6,500,000

사업명	병역백서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재학생 중 병역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학생 비율이 높은 만큼 학생회 차원에서 병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
담당 국	2기 D팀
시기	6~7월 중
세부 계획	6-7월: 제작 예정 제31대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만들었던 병역백서를 참고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2023년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할 예정
예산 항목	없음

사업명	창업백서
취지 및 목표	처음 창업에 대해 고민하는 공과대학 학우들을 대상으로, 대학이 제공하는
	창업 관련 정보 등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수합·정리하여 배
	포하고자 함. 현재 창업지원은 많으나 산발된 정보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함. SNU공학컨설팅센터, 서울대 창업지원단,
	SNU창업멘토링 등 기존의 지원 사항을 다룰 예정.
담당 팀	2기 R팀
시기	4-6월
	4월 2-4주차 : 창업 지원 관련 정보 수합
	5월 1주차 : 수합된 정보 바탕으로, 창업 경험자 인터뷰 필요여부 결정 및
세부계획	필요시 인터뷰이 섭외
	5월 2주차 : 대상자 인터뷰 진행
	5월 3주차 : 창업 지원 정보 정리 및 카드뉴스 시안 제작
	6월 2주차 : 카드뉴스 및 백서 배포
예산 항목	없음

사업명	배리어프리 개선
취지 및 목표	장애인 학우들을 대상으로, 공과대학 캠퍼스 내의 일상적인 이동에 대하여 제약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를 위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이동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장소·시설을 파악하고, 학내 시설물 담당부서와 조율하여 이들 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함. 추가로 가능할 시
	서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캠퍼스 개선 및 장애 학우들을 위한 정보 홍보 등을 협업할 계획임. *경사로 설치, 점자 도입, 편의시설 여부 안내 및 피드백 등을 포함함.
담당 팀	2기 R팀
시기	4-7월
세부계획	4월 4주차 : 서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면담 5월 3-4주차: 공과대학 건물 불편사항 조사 5월 5주차 : 시설물 담당자 면담 6월 2-3주차 : 사업 현황 피드백 6월 4주차 : 사업성과 정리 및 카드뉴스 시안 제작 7월 1주차 : 카드뉴스 배포
예산 항목	없음

사업명	월간진로 4월: 교수님들의 연구
	강연식의 일방향 진로행사보다 교수님과의 밀도 깊은 만남을 통해 쌍방향
취지 및 목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이를 통해 평소 해당 분야의 진로
	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도움.
담당 팀	2기 E팀
시기	4-5월
세부계획	4월 1주차: 날짜 확정 및 대략적 계획 수립 후 교수님 컨택 4월 2주차: 멘토 교수님 확정 후 세부 계획 수립, 홍보 및 멘티 신청 받기 4월 3-4주차: 장소 대여 5/2: 행사 진행
예산 항목	연사 섭외, 참가자 및 스태프 간식: 900,000

사업명	모기 잡아드림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학우들의 생활공간에 모기 및 벌레들의 침범을 최대한 예방하고 벌레가 나타났을 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처 방안들을 고안.
담당 팀	2기 E팀
시기	4-6월
세부계획	4월 4주차-5월 1주차: 설문조사, 모기 및 벌레의 예방을 위한 방안 아이디어, 벌레 대응 방안 아이디어 내기 5월 2-4주차: 현장 답사, 실행 가능 방안 확정 및 시행 6월: 설문 조사를 통한 후속 대응
예산 항목	모기 퇴치에 필요한 장비 비용: 500,000

사업명	월간진로 6월
취지 및 목표	월간진로 6월(대기업)에서는 공과대학 학우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종 중 대기업에서 실무를 맡고 계신 선배님들을 모셔 일방향 소통이 이 루어지는 진부한 진로 행사가 아닌, 분야를 세분화한 행사를 통해 학우 분 들께 기업의 실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
담당 국	2기 A팀
시기	5-6월
세부 계획	 5월 1-2주차 : 연사 섭외 5월 3주차 : 행사 장소 섭외 및 행사 홍보 5월 4~5주차 : 참가 신청 접수 6월 5일 또는 7일 : 본 행사 진행
예산 항목	연사 섭외 비용: 900,000 기타 행사 진행 비용: 300,000 (* 74 통장 900,000, 근장비 300,000)

사업명	월간진로 7월: 유학 세미나
취지 및 목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유학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이전에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졸업을 하셔 일반 학우들이 유학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음. 따라서 월간진로 7월(유학 세미나)에서는 해외 대학원 과정에 합격하신 선배님을 초청하여 공과대학 학우 분들께 유학 준비 과정을 포함한 유학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담당 국	2기 A팀
시기	5-7월
	5월 1-2주차 : 연사 섭외
	5월 3주차 : 행사 장소 섭외 및 홍보 자료 제작
세부 계획	6월 2-3주차 : 행사 홍보
	6월 4-5주차 : 참가 신청 접수
	7월 3일 또는 5일 : 본 행사 진행
	7월 3주차 : 강의 내용 정리본 배포
예산 항목	연사 섭외 비용: 300,000
	기타 행사 진행 비용: 300,000
	* 근장비 600,000

사업명	공과대학 체육대회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내 학부/과/반 간의 단합력을 증진하고, 공과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담당 국	2기 M팀
시기	5월
세부 계획	4월: 종목 및 구성 기획 5월 1주차: 공지 및 참가 신청 수합 5월 2주차: 예선 및 본선 진행
예산 항목	푸드트럭 1,000,000 상품 800,000 참여자 간식비 1,000,000 장소 대관 400,000 행사 물품 1,800,000 * 3,000,000 행정실 지원금 사용

사업명	복학생에게 알려드림 2
취지 및 목표	'복학생에게 알려드림 1'사업을 계승하여 복학생에게 학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함.
담당 국	2기 M팀
시기	7월
세부 계획	7월 1주차: 본문 내용 기획 7월 2주차: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예산 항목	없음

Ⅳ. 논의 및 의결안건

- 1.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구성 축소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 2. 학부/과/전공/반학생회 대의원 구성 관련학생회칙
- 3. 연합전공생의 학생회원권 부여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 4. 기타 학생회칙 개정의 건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구성 축소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

1. 개정 취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24조에 따르면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 회의가 열리지 못했을 때 회칙개정을 제외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최고 결정 기구입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나 공과대학 외 타 단과대학 학생회의 운영위원회가 각단위 학생회장만으로 구성되는 만큼,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또한 그 구성을 학부/과/반/전공의 학생회장만으로 축소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합니다. 단, 총학생회칙 제31조 제3항과 같이 학생회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부학생회장 1인에게 권한을 임시로 위임할 수 있는 조항 또한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운영위원회에서 각 안건에 대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가·부 표결 여부가 대부분 합치해온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안건의 표결 결과가 각 학부/과에서 참석한 운영위원 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으로 축소한다면 표결의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조표 및 각 조항의 개정/신설 취지를 작성하여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대조표의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개정 이전 조항	개정 이후 조항		
삭제			
	<u>추가</u>		

개정 이전

제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 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 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하되.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학부/과/전공/반 부학 생화장단"으로 명하고,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단 중 참석자가 1인 이상일 경 우 정족수와 의결권은 1인에 준한다. <개 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29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 제29조 (의결) 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개정 이후

제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 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 과/전공/반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 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다.
- ② 제25조의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숭인 하에 해당 단위의 부학생회 장 1인에게 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임 시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취지>

- 개정 취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으로 축소하였습 니다.
- 총학생회칙 제31조 제3항처럼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불참 시 부학생회장 1인 에게 임시로 운영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2조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및 **부학생회장**) [문구수정 2018.04.03.]<개정 2022.10.07>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중에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4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문구수정 2018.04.03.1<개정 2022.10.07>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중에서 선출됨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개정 취지>

- 조항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조항 소제목에 누락된 '반'을 추가하였습니다.
- 공과대학 학생회칙 중 제5장 학부/과/전공/반 학생회는 공과대학 내 기층 단위의학생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소개 및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칙 내 해당조항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제42조는 본래 기층 단위 대표자 1인의 지위 및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부학생회장의 운영위원 자격이 없어진다면 조항 내에서 함께 소개될 필요 없이 대표자 1인인 학생회장에 관한 내용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개정 취지>

- 조항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조항 소제목에 누락된 '반'을 추가하였습니다.
- 학생회칙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공과 대학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제25조의 운영위원회 구성 축소 내용을 연석회의의 구성에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학부/과/전공/반학생회 대의원 구성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

1. 개정 취지

2022 하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광역반 학생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칙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 과정에서 학부/과 소속의 반학생회만을 의미했던 기존 학생회칙의 반학생회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였지만, 공과대학 연석회의 1차 회의 (12/1),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12/5)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따르면 회칙이 개정되었음에도 학부/과 소속의 반학생회의 대의원 구성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지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 회칙(2022.10.07. 개정)상 학부/과학생회와 그 소속 반학생회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대의원 자격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과대학 내 12개의 학부/과 학생회 중에서는 그 소속 반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는 단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및 2023 상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구성을 확정할 때 학부/과 소속 반학생회 대의원은 제외되었으나, 앞으로의 학부/과 소속 반학생회 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대의원이학부/과 대의원과 복수로 인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학부/과/전공/반 대표자의 직접선거 조건을 추가하여 대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때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2.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조표 및 각 조항의 개정/신설 취지를 작성하여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대조표의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개정 이전 조항	개정 이후 조항		
삭제			
	<u>추가</u>		

개정 이전

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u>학년 대표</u> 예외규정) <신설 2018.10.04.><개정 2022.10.07>

- 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 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학생회의 대표자 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② <삭제 2022.10.07.>
- 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 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 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④ <삭제 2022.10.07.>
- ⑤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는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이후

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u>대의원</u> 예외 규정) <신설 2018.10.04.><개정 2022.10.07.>

- 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 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학생회의 대 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 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② <삭제 2022.10.07.>
- 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반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④ <삭제 2022.10.07.>
- ⑤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는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취지>

- 제16조2의 경우 학년 대표뿐만 아니라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전반적인 대의원 예외 규정을 나열하므로 이에 알맞게 조항 제목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2022 하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해당 조항이 개정된 취지는 반학생회가학부/과 소속의 반학생회만을 의미하는 위계를 수정하고자 했던 것이나, 개정 전 제 16조의2 제1항·제3항에는 '그 소속'이라는 표현이 존재해 조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학부/과에 소속된 반학생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제16조에서 이미 학부/과 학생회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된 광역반과는 관련이 없던 조항이며, 오히려 해당 개정으로 인하여 학부/과 소속 반학생회 대의원이 학부/과 대의원과 중복하여 존재할수 있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제16조의2를 2022 하반기 회칙개정 이전의 조항으로 되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신설)

제25조의2 (학부/과/전공/반 운영위원 예 외 규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 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학생회의 학 생회장이 동시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운영위 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 여야 하다.

<신설 취지>

• 제16조2에서 학부/과학생회와 그 소속 반학생회의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동시 대의원을 제한하는 것처럼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그 구 성의 예외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문구수정 2018.04.03.]<개정 2022.10.07>

각 _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중에서 |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전체의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4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제4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문구수정 2018.04.03.]<개정 2022.10.07>

>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은 각 학부/과/전공/반을 대표하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개정 취지>

- 학부/과/전공/반 대표자의 직접선거 조건을 추가하여 대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논의할 때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 다.
- 총학생회칙 제44조를 참고하여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이 해당 단위를 대표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단, 연석회의의 구성은 제25조의2를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개정 취지>

• 제25조의2의 신설 취지와 마찬가지로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구성에도 학부/과학생회와 그 소속 반학생회의 동시 대의원 제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제16조의2, 제25조의2 및 제42조 관련 부연 설명

개정안 제16조의2와 제25조의2에 따르면 각각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학부/과 학생회와 그 소속 반학생회의 대표자(학생회장)는 중복하여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5장의 조항 중 제42조(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는 별도로 학부/과 소속 반학생회대표의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개정안을 작성하였던 회·세칙특위는 위 조항들의 배치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 학생회칙 제5장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한 것이 아닌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 ▶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제2장·제3장을 통해 직접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42조가 두 개의 예외 조항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연합전공생의 학생회원권 부여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

1. 개정 취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3조는 본회의 회원을 "공과대학의 학사 과정 재적 중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과대학 내 학부/과/전공/반으로 입학한 자를 의미하며, 이외에 제3조의2는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와 자유전공학부에서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진입한 자에게 학생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시행 2012.7.12.)에 따르면 연합전공은 복수전공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전공'으로 취급되며 졸업증서 및 학적부 등에도 주전공과 동등하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공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의 복수전공생/자유 전공학부 전공진입생의 학생회원권 신청 당시 연합전공생 학우분들의 회원권 신청 요구가 있었기에, 주관대학이 공과대학인 연합전공에 한하여 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2.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조표 및 각 조항의 개정/신설 취지를 작성하여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대조표의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개정 이전 조항	개정 이후 조항		
	<u>추가</u>		

-11	정		정
<i>/</i> H	/ 3	O	<u> </u>

제3조의2 (복수전공/전공진입생의 회원권 인정) 〈신설 2017.09.29.〉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공과대학 내 전공을 복수전공 중인 자, 자유전공학부에서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진입한 자가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과대학 학생회원권을 부여할수 있다. 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회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개정 이후

제3조의2 (회원권의 예외적 인정) <신설 2017.09.29.> [문구수정 2018.04.03.] [문 구수정 2022.10.0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과대학 학생 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제4조 제1 항에 해당하는 본회 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복수전공<u>을 이</u>수 중인 자
- 2. 자유전공학부에서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진입한 자
- 3. 주관대학이 공과대학인 연합전공을 이 수 중인 자

<개정 취지>

- '복수전공 중인 자'는 잘못된 표현으로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로 문구를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학생회원권의 인정 대상에 주관대학이 공과대학인 연합전공을 이수 중인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 연합전공생까지 본 조항에 추가될 경우, 문장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에 인정 대상을 호로 분리하고, 조항 제목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4

기타 학생회칙 개정안

1. 개정 취지

논의 및 의결안건 1번, 2번 및 3번에 해당하는 학생회칙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되었던 개정 사안들입니다. 주로 오타 및 맞춤법, 통일되지 않은 표기를 수정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개정일자(*<개정 YYYY.MM.DD.>*)의 끝에 마침표(.)가 빠져있거나, 2개 이상의 개정일자 사이에 띄어쓰기가 생략되었거나, 개정일자 중간에 줄바꿈이 이루어지는 등 잘못되거나 통일되지 않은 개정일자 표기 방식을 일괄적으로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 문장부호(마침표, 쉼표 등)가 생략되었거나 조항 중간에 줄바꿈이 이루어지는 등의 잘 못된 맞춤법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 하나의 조항과 그 세부 조항에 중복하여 표기된 개정일자(제42조, 제59조 등) 중 개정 취지가 동일한 경우 세부 조항의 개정일자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 ▶ 조항 본문임에도 글자 모양이 '진하게' 처리된 내용의 속성을 제거하고 일반 글자로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2.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조표 및 각 조항의 개정/신설 취지를 작성하여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대조표의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삭제			
개정일자 표기 수정 전	개정일자 표기 수정 후		
맞춤법 수정 전	맞춤법 수정 후		
본문임에도 '진하게' 속성이 적용된 본문	수정 후 본문		

개정 이전

제4조 (회원의 권리)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6.09.22>
- 1. 운영위원
-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 사하려는 자
- 3. 기타 본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제4조의2 (피선거권의 박탈) <u><신설</u> 2017.09.29> <개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 및 당해 특별기구의 활동과그 결과를 통해 본회의 명예, 권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윤리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당사자의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서면 또는 출석으로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개정 2019.09.10.> [문구수정 2022.10.07.]
- ② 안건 상정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 내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 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해 특별기구는 해당회원 신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 <개정 2018.04.03.><개정 2019.09.10.> <개정 2022.10.07.>

개정 이후

제4조 (회원의 권리)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u><신설</u> 2016.09.22.>
- 1. 운영위원
-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 사하려는 자
- 3. 기타 본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제4조의2 (피선거권의 박탈) <u><신설</u> 2017.09.29.> <개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 및 당해 특별기구의 활동과 그 결과를 통해 본회의 명예, 권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윤리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당사자의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서면 또는 출석으로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개정 2019.09.10.> [문구수정 2022.10.07.]
- ② 안건 상정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해 특별기구는 해당회원 신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개정 2018.04.03.> <개정 2019.09.10.> <개정 2022.10.07.>

제6조 (기구) 본회는 공과대학 학생 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 행위원회.

학부/과 학생회, 산하기구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7조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개정 2018.04.03.>

-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2장의 상설집행기구인 산하기구 및 단 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4.03.>
- ② 특별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구성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 및 해산한다.

<개정 2016.09.22>

제10조 (의장)

- ①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 총회의 운영 전 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과대학 학생 총회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u><단서 신설</u> 2016.09.22>

제11조 (소집)

- ① 공과대학 학생 총회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소집할 의무가 있다.
- 1.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문구수 정 2018.04.03][문구수정 2022.10.07.]
- 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개정 2016.09.22>

제6조 (기구) 본회는 공과대학 학생 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 행위원회, 학부/과 학생회, 산하기구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7조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개정 2018.04.03.>

-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2장의 상설집행기구인 산하기구 및 단 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4.03.>
- ② 특별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구성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 및 해산한다. <개정 2016.09.22.>

제10조 (의장)

- ①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 총회의 운영 전 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과대학 학생 총회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u><단서 신설</u> 2016.09.22.>

제11조 (소집)

- ① 공과대학 학생 총회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소집할 의무가 있다.
- 1.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문구수 전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개정 2016.09.22.>

제13조 (의결) <개정 2016.06.27> [문구 수정 2018.04.03.]

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 수에 제하되 총회에 참석한 경우 재적 수에 더한다. 단,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제14조 (총투표) <u><신설 2016.06.27></u> [문 구수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 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 ② 총투표는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③ 총투표는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수에 제하되 총투표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 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과 대학 학생회칙 제 6장에 따른다. 단, 운영 위원회 또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 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구성)

① 공학대회는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학 대회 대의원이 된다. 단, 1인을 복수의 대 의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7.03.30., 2018.04.03 >

제13조 (의결) <개정 2016.06.27.> [문구 수정 2018.04.03.]

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 수에 제하되 총회에 참석한 경우 재적 수에 더한다. 단,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제14조 (총투표) <u><신설 2016.06.27.></u> [문 구수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 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 ② 총투표는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③ 총투표는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수에 제하되 총투표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 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과 대학 학생회칙 **제6장**에 따른다. 단, 운영 위원회 또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 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구성)

① 공학대회는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학 대회 대의원이 된다. 단, 1인을 복수의 대 의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7.03.30., 2018.04.03.>

- 1.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공과대학 부학 생회장
- 2.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생회장, 부학 생회장. 단, 각 학부/과/전공/반의 부학 생회장은 **최대 2인**
- 으로 제한한다. <u><개정 2016.06.27.</u>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 3.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 대표 1인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18.10.04.]
- 4. 공과대학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가 요 구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인정받은 그 동아리의 대표자 <개정 2016.06.27.><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 대의원 예외 규정) <신설 2018.10.04.><개정 2022.10.07>

- 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 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학생회의 대 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 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② <삭제 2022.10.07.>
- 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 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반의 학 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 야 한다. <개정 2022.10.07>

- 1.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공과대학 부학 생회장
- 2.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단, 각 학부/과/전공/반의 부학생회장은 최대 2인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 3.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 대표 1인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18.10.04.]
- 4. 공과대학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가 요 구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인정받은 그 동아리의 대표자 <개정 2016.06.27.>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 대의원 예외 규정) <신설 2018.10.04.> <u><개정</u> 2022.10.07.>

- 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 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학생회의 대 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 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② <삭제 2022.10.07.>
- 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반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제17조 (의장)

- ① 의장은 공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학대회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u><단서 신설</u> 2016.09.22>

제21조 (탄핵) <개정 2016.06.27>

- ① 공학대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u><개정</u> 2016.06.27>
- ② 탄핵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
-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23조 (안건상정) <개정 2018.04.03>

- ①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한 의 안은 운영위원회가 개회 3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 ②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50 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제17조 (의장)

- ① 의장은 공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학대회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u><단서 신설</u> 2016.09.22.>

제21조 (탄핵) <개정 2016.06.27>

- ① 공학대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 ② 탄핵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8.04.03.]
- 제22조 (개의 및 의결) 공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 제56조를 따른다.
 전설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23조 (안건상정) <개정 2018.04.03.>

- ①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한 의 안은 운영위원회가 개회 3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 ②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50 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공과 대학 학생회장, 집행위원회 등이 개회 전 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8.04.03.>

제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 절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30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제58조의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의 의장, 부의장을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제33조 (임기)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 대학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 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 정 2016.09.22>

제34조 (선출) <문구수정 2014.10.29>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4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②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2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공과 대학 학생회장, 집행위원회 등이 개회 전 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8.04.03.>

제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30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제58조의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의 의장, 부의장을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제33조 (임기)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 대학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 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 정 2016.09.22.>

제34조 (선출) [문구수정 2014.10.29.]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4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②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2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 |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 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6장을 따른다.

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 과 같은 선서를 공학대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 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제3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장 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제 40조에 의해 구성된 각 부서의 장의 임명 및 해임권

<개정 2018.04.03.>

2018.04.03.]<개정 [문구수정 2022.10.07>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각 학부/과/전공/반을 학생회장은 대표하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43조 (학부/과/전공/반 학부/과/전공/반 대표는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개정2017.03.30> <개정 2018.04.03.>

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6장을 따른다.

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 과 같은 선서를 공학대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 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제3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장 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제 40조에 의해 구성된 각 부서의 장의 임명 및 해임권 <개정 2018.04.03.>

제4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제4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く개정 [문구수정 2018.04.03.] 2022.10.07.>

>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전체의 학부/과/전공/반 직접선거로 선출된 각 학부/과/전공/반을 학생회장은 대표하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워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대표) 제43조 (학부/과/전공/반 대표) 학부/과/전공/반 대표는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7.03.30.>** <개정 2018.04.03.>

제44조 (선거시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2학기 중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u><개정</u> 2014.10.29, 2016.06.27.>

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 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u><문구수정</u> 2017.09.29.>
- 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선관위는 운영위원 회가 지명하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학부/ 과/전공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 의 1/4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개정 2018.10.04.><개정 2019.09.12.>
- ③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선관위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를 접수·심의·처리한다. <개정 2017.09.29><개정

제46조 (선거방법)

2019.09.12.>

- 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 ② 자세한 사항은 제48조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u><개정</u> 2017.09.29>

제48조 (선거 세칙) [문구수정 2014.10.29.] <u><개정</u> 2014.10.29. 2016.06.27.>

- ① 입후보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 ② 선거운동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09.12.>

제44조 (선거시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2학기 중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u><개정</u> 2014.10.29., 2016.06.27.>

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 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문구수정 2017.09.29.]
- 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선관위는 운영위원 회가 지명하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학부/ 과/전공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 의 1/4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개정 2018.10.04.> <개정 2019.09.12.>
- ③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선관위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를 접수·심의·처리한다. <개정 2017.09.29.> <개정 2019.09.12.>

제46조 (선거방법)

- 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 ② 자세한 사항은 제48조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u><개정</u> 2017.09.29.>
- - ① 입후보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 ② 선거운동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09.12.>

③ 투표일은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하고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가 의결로 정하되, 기간은 본투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 다.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6.06.27><개정 2019.09.12.>

④ <삭제 2017.09.29>

- ⑥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 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단, 한 조의 후 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 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 ⑦ 이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2017.09.29>

® 선거시행세칙은 공학대회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2일 이내에 공과 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u><신설</u>

⑨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7.09.29>

2017.09.29>

③ 투표일은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하고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가 의결로 정하되, 기간은 본투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 다.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6.06.27.> <개정 2019.09.12.>

④ <삭제 2017.09.29.>

- ⑤ 개표는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의 과반수 투표율을 달성할 시 진행한다. 단, 휴학생이 투표할 경우 분모와 분자에 점을 더한다. (예: 재학생 3500, 휴학생 500명 中 재학생 2000명, 휴학생 250명이 투표한 경우의 투표율 = 100*(2000+250)/(3500+250)) < <u><개정</u> 2014.10.29.> [문구수정 2016.06.27.]
- ⑥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 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단, 한 조의 후 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 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 ⑦ 이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2017.09.29.>
- ⑧ 선거시행세칙은 공학대회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2일 이내에 공과 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신설 2017.09.29.>
- ⑨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7.09.29.>

제50조 (경비와 관리)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학생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집행한다. 집행위원회는 회비 배분금의 일부를 산하기구에 우선 할당하여야 하며, 그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09.22> <개정 2018.04.03.>

제5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 33조에 명기된 임기에 준하며, 회기는 제 1기 12월 1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제2 기는 제1기 이후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8.04.03.>

제53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집행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공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6.09.22>

제57조 (구성) <삭제 2018.04.03.>

제58조 (업무) <삭제 2018.04.03.>

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단, 연석회의의 구성은 제25조의2를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3.>

제50조 (경비와 관리)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학생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집행한다. 집행위원회는 회비 배분금의 일부를 산하기구에 우선 할당하여야 하며, 그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09.22.> <개정 2018.04.03.>

제5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 33조에 명기된 임기에 준하며, 회기는 제 1기 12월 1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제2 기는 제1기 이후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8.04.03.>

제53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집행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공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6.09.22.>

제57조 (구성) <삭제 2018.04.03.>

제58조 (업무) <삭제 2018.04.03.>

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단, 연석회의의 구성은 제25조의2를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3.>

-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 1. 정식 명칭은 '0000(해당년도)년도 서울 대학교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 회의', '0000 (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 2.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약칭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갈음한다. [문구수정 2022.10.07.]
- 3. 산하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구성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과대학 학생회산하기구'로 호칭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③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 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 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④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제60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 회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준하는 책 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하다.
- 1. 정식 명칭은 '0000(해당년도)년도 서울 대학교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 회의', '0000 (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한다.
- 2.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약칭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갈음한다.
- 3. 산하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구 성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로 호칭한다.
- ③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 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 한다. <개정 2016.06.27>
- ④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 회의는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제60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제61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22.10.07.]
-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의장이 구성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제63조 (구성) 공과대학 동아리는 가등록 동아리와 정식등록 동아리로 구성된다. <신설

2017.03.30, 조문이동 2018.04.03.>

제64조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 <신설 2018.04.03.>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동아리 관련 제반 사항의 조정을 위해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61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의장이 구성한다.

제63조 (구성) 공과대학 동아리는 가등록 동아리와 정식등록 동아리로 구성된다. <신설 2017.03.30., 조문이동 2018.04.03.>

제64조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 <신설 2018.04.03.>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동아리 관련 제반 사항의 조 정을 위해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 를 구성한다.

- ②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
- 2.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집행위
- 원 1인 <개정 2022.10.07>
- 3. 정식등록 동아리의 대표자

제65조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 <신설 2018.04.03.>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1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 대학 동아리의 등록, 권리, 활동심사, 징 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 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제12장 산하기구 <신설 2018.04.03.> <개정 2019.09.12., 2020.05.11.> <개정 2022.10.07>

제67조 (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

- ① 운영위원회는 산하기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 회장의 발의와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 다.
- 1. 제70조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 2.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기구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기구 운영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문 구수정 2022.10.07]

- ②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
- 2.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집행위원 1인 <개정 2022.10.07.>
- 3. 정식등록 동아리의 대표자

제65조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 <신설 2018.04.03.>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 1.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 과대학 동아리의 등록, 권리, 활동심사,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다.
- 2.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 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제12장 산하기구 <신설 2018.04.03.> <개정 2019.09.12., 2020.05.11.> <개정 2022.10.07.>

제67조 (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

- ① 운영위원회는 산하기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 회장의 발의와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 다.
- 제70조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 2.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기구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기구 운영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문 구수정 2022.10.07.]

제2절 <삭제 2019.09.12.>

제72조 <삭제 2019.09.12.>

제73조 <삭제 2019.09.12.>

제3절 *〈신설 2020.05.11.〉 〈삭제* 2022.10.07.>

제74조 <삭제 2022.10.07.>

제75조 *<삭제 2022.10.07>*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 항은 총학생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개 정 2016.06.27>

부칙(2022.10.07.)

제4조 공과대학 학생회는 (가칭) 공학계열 반 학생회칙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 한다.<신설 2022.10.07>

제5조 공학계열반 학생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안은 공학계열 학생회 구성시 행세칙을 따른다. <신설 2022.10.07> 제6조 부칙 제4조와 제5조의 효력은 공학 계열반 학생회칙 제정과 동시에 말소되 며, 이후 회칙개정을 통해 해당 부칙 및 세칙의 폐지를 논의한다. <신설 2022.10.07>

제2절 <삭제 2019.09.12.>

제72조 <삭제 2019.09.12.>

제73조 <삭제 2019.09.12.>

제3절 <신설 2020.05.11.> <삭제 2022.10.07.>

제74조 <삭제 2022.10.07.>

제75조 <삭제 2022.10.07.>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운영위원회 제2조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운영위원회 의 결정에 따른다.

>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 항은 총학생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개 정 2016.06.27.>

부칙(2022.10.07.)

제4조 공과대학 학생회는 (가칭) 공학계열 반 학생회칙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 한다. <신설 2022.10.07.>

제5조 공학계열반 학생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안은 공학계열 학생회 구성시 행세칙을 따른다. <신설 2022.10.07.> 제6조 부칙 제4조와 제5조의 효력은 공학 계열반 학생회칙 제정과 동시에 말소되 며, 이후 회칙개정을 통해 해당 부칙 및 세칙의 폐지를 논의한다. <신설 2022.10.07.>

V. 심의 안건

- 1. 2022년 2기(2022.06.15.~2023.11.30.) 공과대학 학생회 결산(안)
- 2. 2023년 1기(2022.12.01.~2023.06.14.) 공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결산(안)

1

2022년 2기(2022.06.15.~2022.11.30.) 공과대학 학생회 결산(안)

1. 산입지출요약

<00통장>

산입 요약

ਨ੍ਹੇ	세목	산입 (₩)
이월금	2022년 1기 이월금	6,273,361
예금이자	예금이자	3,325
학생회비	2학기 학생회비 분납금	2,090,943
	8,367,629	

지출 요약

ठे	세목	지출 (₩)
사업비	교환학생세미나	284,700
사업비	공대스터디 2차	155,500
사업비	공대 프로그래밍	600,500
사업비	공대 망한과제전	500,500
사업비	마스코트공모전	500,500
사업비	간식사업대금	500,500
사업비	축제 SNS 이벤트	100,500
사업비	다전공백서	182,000
사업비	산업동향세미나	600,500
운영비	공학대회자료집	338,000
	지출 총계	3,763,200

<74통장>

산입 요약

<u>~1</u>	vii 🗆	2101 (M)
항	세목	산입 (₩)
이월금	2022년 1기 이월금	273,832
예금이자	예금이자	364
후원금	바이 <u>트</u>	500,000
후원금	크립토랩	1,500,000
후원금	스누라이프	500,000
후원금	스타랩스	2,000,000
	4,774,196	

지출 요약

ंहे	세목	지출 (₩)
사업비	가을축제 기획사 대금	
	4,501,000	

2. 항목별요약

<00통장>

사업비

(다음 페이지 참고)

연번	거래일자	담당자	항	목	내용	산입	지출
2	6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교환학생세미나			₩83,700
3	6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교환학생세미나 수수료			₩500
4	7월 1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교환학생세미나			₩200,000
5	7월 1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교환학생세미나 수수료			₩500
6	7월 13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공대스터디2차			₩155,000
7	7월 13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공대스터디2차 수수료			₩500
8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공대프로그래밍			₩600,000
9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공대프로그래밍 수수료			₩500
10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공대망한과제전			₩500,000
18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이영선		₩30,000
19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수수료			₩500
20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양준철		₩30,000
21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김기성		₩30,000
22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수수료			₩500
23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박준범		₩30,000
24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권재영		₩30,000
25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수수료			₩500
26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임진우		₩30,000
27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수수료			₩11,230
29	11월 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산업동향세미나	연사비		₩300,000
30	11월 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산업동향세미나	연사비		₩300,000
31	11월 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산업동향세미나 수수료			₩500

운영비 및 예금이자

연번	거래일자	담당자	항	목	내용	산입	지출
1	6월 18일	김경태 학생회장	예금이자	예금이자	12.18~06.17	₩3,325	
32	11월 8일	김경태 학생회장	운영비	공학대회자료집			₩338,000

학생회비

연번	거래일자	담당자	항	목	내용	산입	지출
28	10월 6일	김경태 학생회장	학생회비	총학생회 분담금	서울대 총 학	₩2,090,943	

<74통장>

사업비

연번	거래일자	담당자	항	목	내용	산입	지출
5	8월 24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가을축제후원금			₩2,500,000
6	8월 24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가을축제후원금 수수료			₩500
8	9월 5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가을축제후원금			₩2,000,000
9	9월 5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가을축제후원금 수수료			₩500

운영비 및 예금이자

연반		담당자	항	목	내용	산입	지출
1	6월 18일	김경태 학생회장	예금이자	예금이자	12.18~06.17	₩364	

후원금

연번	거래일자	담당자	항	목	내용	산입	지출
2	8월 12일	김경태 학생회장	후원금	바이 <u>트</u>		₩500,000	
3	8월 18일	김경태 학생회장	후원금	크립토랩		₩1,500,000	
4	8월 18일	김경태 학생회장	후원금	스누라이프		₩500,000	
7	9월 5일	김경태 학생회장	후원금	스타랩스		₩2,000,000	

3. 세부 내역 - 별첨 1, 별첨 2 참고

2023년 1기(2022.12.01.~2023.06.14.) 공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00통장>

1. 예상 수입

예상 수입		
항 목	금	액(₩)
2022년 2기 이월금		4,604,429
예금이자 (기)		2,309
총학생회 분담금 (기)		2,979,024
합계		7,585,762

2. 예상 지출

	예상 지출									
	항		목	예상 예산(₩)						
운	영	금	드랍박스 연간 구독료 (기)	156,508						
운	영	금	공동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기)	4,400						
사	업	ㅂ]	모기 잡아드림	500,000						
		660,908								

<74통장>

1. 예상 수입

예상 수입	
항 목	급 액(₩)
2022년 2기 이월금	273,196
예금이자 (기)	165
새내기 새로배움터 대금 (기)	104,870,000
계산기 공동구매 대금 (기)	9,454,000
후원금 (기)	6,000,000
합계	120,597,361

2. 예상 지출

	예상 지출						
	항		목	예상 예산(₩)			
사	업	ㅂ]	새내기 새로배움터 대금 (기)	104,290,390			
사	업	ㅂ]	계산기 공동구매 대금 (기)	9,455,000			
사	업	ㅂ]	파이데이 행사 (기)	477,110			
사	업	ㅂ]	흡연구역 설문조사	85,100			
사	업	ㅂ]	월간 진로 3월: 진로탐색 멘토링	644,520			
사	업	ㅂ]	카카오톡 채널 홍보 이벤트	86,370			
사	업	ㅂ]	월간 진로 4월: 교수님들의 연구	900,000			
사	업	ㅂ]	월간 진로 6월	900,000			
사	업	ㅂ]	월간 진로 7월: 유학세미나	300,000			
사	업	ㅂ]	공과대학 체육대회	2,000,000			
	·		합계	119,138,490			

2023년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결산(안)

1. 수입

수입 내역		
항 목	금	액(₩)
2023년 공과대학 학과(부)/반별 참가비		91,680,000
스태프 및 공연진 참가비		8,190,000
광고대행사 계약금		3,000,000
근로장학금비 가집행		2,000,000
합계		104,870,000

2. 지출

지출 내역								
	항 목	급	액(₩)					
프로그램비	프로그램 준비 비용		323,640					
기획사비	숙박+식사+무대설치+버스+파손		93,843,500					
공연비	공연비 동아리 공연비							
식비	주류 업체 대금		6,017,500					
환급비	등록포기,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한 환급		541,500					
기타	근로장학금비 가집행 환급 및 사비처리 환 급		2,779,250					
	합계		104,290,390					

3. 세부 내역 - 별첨 3 참고

별 첨 1

- 1. 2022년 2기 통장 세부내역 (00통장)
- 2. 2023년 1기 통장 세부내역 (74통장)
- 3.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세부내역 (74통장)

2022년 2기 통장 세부 내역 (00통장)

연번	거래일자	담당자	항	목	내용	산입	지출	잔액
0			2022-1기 이월금					₩6,273,361
1	6월 18일	김경태 학생회장	예금이자	예금이자	12.18~06.17	₩3,325		₩6,276,686
2	6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교환학생세미나			₩83,700	₩6,192,986
3	6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교환학생세미나 수수료			₩500	₩6,192,486
4	7월 1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교환학생세미나			₩200,000	₩5,992,486
5	7월 1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교환학생세미나 수수료			₩500	₩5,991,986
6	7월 13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공대스터디2차			₩155,000	₩5,836,986
7	7월 13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공대스터디2차 수수료			₩500	₩5,836,486
8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공대프로그래밍			₩600,000	₩5,236,486
9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공대프로그래밍 수수료			₩500	₩5,235,986
10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공대망한과제전			₩500,000	₩4,735,986
11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공대망한과제전 수수료			₩500	₩4,735,486
12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마스코트공모전			₩500,000	₩4,235,486
13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마스코트공모전 수수료			₩500	₩4,234,986
14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간식사업대금			₩500,000	₩3,734,986
15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간식사업대금 수수료			₩500	₩3,734,486
16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축제SNS			₩100,000	₩3,634,486
17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축제SNS 수수료			₩500	₩3,633,986

18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이영선		₩30,000	₩3,603,986
19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수수료			₩500	₩3,603,486
20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양준철		₩30,000	₩3,573,486
21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김기성		₩30,000	₩3,543,486
22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수수료			₩500	₩3,542,986
23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박준범		₩30,000	₩3,512,986
24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권재영		₩30,000	₩3,482,986
25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수수료			₩500	₩3,482,486
26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임진우		₩30,000	₩3,452,486
27	9월 2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다전공백서 수수료			₩11,230	₩3,451,986
28	10월 6일	김경태 학생회장	학생회비	총학생회 분담금	서울대총학	₩2,090,943		₩5,542,929
29	11월 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산업동향세미나	연사비		₩300,000	₩5,242,929
30	11월 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산업동향세미나	연사비		₩300,000	₩4,942,929
31	11월 8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산업동향세미나 수수료			₩500	₩4,942,429
32	11월 8일	김경태 학생회장	운영비	공학대회자료집			₩338,000	₩4,604,429

2 2022년 2기 통장 세부 내역 (74통장)

연번	거래일자	담당자	항	목	내용	산입	지출	잔액	
0				2022-1기 이월금				₩273,832	
1	6월 18일	김경태 학생회장	예금이자	예금이자	12.18~06.17	₩364		₩274,196	
2	8월 12일	김경태 학생회장	후원금	바이트		₩500,000		₩774,196	
3	8월 18일	김경태 학생회장	후원금	크립토랩		₩1,500,000		₩2,274,196	
4	8월 18일	김경태 학생회장	후원금	스누라이프		₩500,000		₩2,774,196	
5	8월 24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가을축제후원금			₩2,500,000	₩274,196	
6	6 8월 24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가을축제후원금			₩500	₩273,696	
	0 2 2 2 2		' '	101	수수료				
7	9월 5일	김경태 학생회장	후원금	스타랩스		₩2,000,000		₩2,273,696	
8	9월 5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가을축제후원금			₩2,000,000	₩273,696	
9	9월 5일	김경태 학생회장	사업비	가을축제후원금			₩500	₩273,196	
	오른 오른			수수료			11000	11270,100	

2023 공과대학 새맞이준비위원회 세부내역 (74통장)

연번	거래일자	담당자	항	목		산입	지출
1	1월 24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컴공1차(분할1/2)	₩	2,000,000	
2	1월 25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컴공1차(분할2/2)	₩	1,840,000	
3	1월 25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조선1차(분할1/3)	₩	1,000,000	
4	1월 25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계1차(분할1/2)	₩	5,000,000	
5	1월 25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계1차(분할2/2)	₩	1,720,000	
6	1월 25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건축1차(일괄)	₩	3,840,000	
7	1월 26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조선1차(분할2/3)	₩	1,000,000	
8	1월 26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에자1차(분할1/2)	₩	2,000,000	
9	1월 26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조선1차(분할3/3)	₩	160,000	
10	1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화생1차(일괄)	₩	6,120,000	
11	1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에자1차(분할2/2)	₩	400,000	
12	1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건환1차(일괄)	₩	4,200,000	
13	1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재료1차(분할1/2)	₩	5,000,000	
14	1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재료1차(분할2/2)	₩	1,120,000	
15	1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산공1차(분할1/2)	₩	1,000,000	
16	1월 28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항공1차(일괄)	₩	2,400,000	
17	1월 28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산공1차(분할2/2)	₩	920,000	
18	1월 30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원핵1차(분할1/3)	₩	1,000,000	_

19	2월 1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전기1차(분할1/9)	₩	1,000,000		
20	2월 1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원핵1차(분할2/3)	₩	1,000,000		
21	2월 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전기1차(분할2/9)	₩	1,000,000		
22	2월 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열전새터 준비물			₩	323,140
23	2월 2일	수수료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24	2월 3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전기1차(분할3/9)	₩	1,000,000		
25	2월 4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전기1차(분할4/9)	₩	1,000,000		
26	2월 4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전기1차(분할5/9)	₩	2,000,000		
27	2월 5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전기1차(분할6/9)	₩	1,000,000		
28	2월 5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전기1차(분할7/9)	₩	2,000,000		
29	2월 5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전기1차(분할8/9)	₩	2,000,000		
30	2월 5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전기1차(분할9/9)	₩	640,000		
31	2월 6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원핵1차(분할3/3)	₩	400,000		
32	2월 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스태프(분할1/4)	₩	2,000,000		
33	2월 11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에자2차(일괄)	₩	480,000		
34	2월 11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원핵2차(일괄)	₩	840,000		
35	2월 11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항공2차(일괄)	₩	1,200,000		
36	2월 11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광역2차(일괄)	₩	4,200,000		
37	2월 1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계2차(일괄)	₩	3,840,000		
38	2월 1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산공2차(일괄)	₩	1,320,000		
39	2월 1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전기2차(일괄)	₩	4,320,000		
40	2월 14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조선2차(분할1/2)	₩	1,000,000		
41	2월 14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조선2차(분할2/2)	₩	440,000		

42	2월 1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건축2차(분할1/2)	₩	300,000		
43	2월 1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화생2차(분할1/2)	₩	2,000,000		
44	2월 1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화생2차(분할2/2)	₩	400,000		
45	2월 1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스태프(분할2/4)	₩	2,000,000		
46	2월 18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주류 업체 대금			₩	5,006,000
47	2월 18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48	2월 18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등록포기자 환불			₩	120,000
49	2월 18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50	2월 18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스태프(문*우) 환불			₩	60,000
51	2월 18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52	2월 18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건축2차(분할2/2)	₩	780,000		
53	2월 19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컴공2차(분할1/2)	₩	880,000		
54	2월 19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컴공2차(분할2/2)	₩	2,000,000		
55	2월 21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사 대금(1/11)			₩	9,000,000
56	2월 21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57	2월 21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사 대금(2/11)			₩	9,000,000
58	2월 21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59	2월 21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사 대금(3/11)			₩	9,000,000
60	2월 2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사 대금(4/11)			₩	9,000,000
61	2월 2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62	2월 2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사 대금(5/11)			₩	9,000,000
63	2월 2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64	2월 2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사 대금(6/11)			₩	9,000,000

65	2월 2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사 대금(7/11)			₩	9,000,000
66	2월 2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67	2월 2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사 대금(8/11)			₩	9,000,000
68	2월 2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69	2월 22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사 대금(9/11)			₩	9,000,000
70	2월 23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재학생(분할1/2)	₩	9,700,000		
71	2월 23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근장비 이월금(임시)	₩	2,000,000		
72	2월 23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스태프(분할3/4)	₩	1,000,000		
73	2월 23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사 대금(10/11)			₩	9,000,000
74	2월 23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75	2월 23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사 대금(11/11)			₩	3,840,000
76	2월 24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재료2차(일괄)	₩	2,640,000		
77	2월 24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근장비 이월금(반납)			₩	2,000,000
78	2월 24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79	2월 26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재학생(분할2/2)	₩	20,000		
80	2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공연진 참가비	₩	2,010,000		
81	2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공연 동아리 지원금			₩	785,000
82	2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주류 업체 대금			₩	830,000
83	2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84	2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주류 업체 배송비			₩	180,000
85	2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86	2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건환2차(일괄)	₩	1,560,000		
87	2월 27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스태프(분할4/4)	₩	1,180,000		
			· · · · · · · · · · · · · · · · · · ·					

88	2월 28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광고대행사 계약금	₩	2,000,000		
89	3월 20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광고대행사 계약금	₩	1,000,000		
90	3월 23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사비처리 정집행			₩	778,250
91	3월 23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92	3월 30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새터 환불 정집행			₩	360,000
93	3월 30일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좌이체 수수료			₩	500

부 록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2022.10.0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2017.03.30. 개정 2017.09.29. 개정 2018.04.03. 개정 2018.10.04. 개정 2019.09.10.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공과대학 학생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여 학생 자치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공과대학의 학사 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

제3조의2 (복수전공/전공진입생의 회원권 인정) <신설 2017.09.29.>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공과대학 내 전공을 복수전공 중인 자, 자유전공학부에서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진입한 자가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과대학 학생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회 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본회 회장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④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⑤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신설 2016.09.22.>
-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참가권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6.09.22>
- 1. 운영위원

-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 3. 기타 본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제4조의2 (피선거권의 박탈) <신설 2017.09.29> <개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 및 당해 특별기구의 활동과 그 결과를 통해 본회의 명예, 권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윤리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서면 또는 출석으로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개정 2019.09.10.> [문구수정 2022.10.07.]
- ② 안건 상정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해 특별기구는 해당 회원 신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개정 2018.04.03.><개정 2019.09.10.><개정 2022.10.07.>

- ③ <삭제 2018.04.03.>
- ④ <삭제 2018.04.03.>

제5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기구) 본회는 공과대학 학생 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학부/과 학생회, 산하기구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7조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개정 2018.04.03.>

-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2장의 상설집행기구인 산하기구 및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4.03.>
- ② 특별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 및 해산한다.

<개정 2016.09.22>

제8조 (학교 당국과의 협의)

- ①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조정을 할 수있다.
- 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당국의 제반 회의의 심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 1. 본회의 활동에 관련한 회원의 징계 사항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호할 권리를 갖는다.
- 2. 회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3.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계된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4. 기타 본회의 운영위원회와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 ③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는 그 회의의 의장과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정한 경우 학교 당국에 그 회의에의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공과대학 학생 총회

제9조 (지위) 공과대학 학생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 (의장)

- ①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과대학 학생 총회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

제11조 (소집)

- ① 공과대학 학생 총회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소집할 의무가 있다.
- 1.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문구수정 2018.04.03][문구수정 2022.10.07.]
- 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개정 2016.09.22>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회의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2조 (역할) 공과대학 학생 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제13조 (의결)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 수에 제하되 총회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단,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총투표) <신설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 ② 총투표는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③ 총투표는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수에 제하되 총투표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 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 6장에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 또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 [문구수정 2018.04.03.]

제1절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문구수정 2018.04.03.]

제15조 (지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공학대회'라 한다.) 는 공과대학학생 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문구수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제16조 (구성)

- ① 공학대회는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단, 1인을 복수의 대의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7.03.30., 2018.04.03 >
- 1.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 2.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단, 각 학부/과/전공/반의 부학생회장은 최대 2인
- 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 3.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 대표 1인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18.10.04.]
- 4. 공과대학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가 요구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인정받은 그 동아리의 대표자 <개정 2016.06.27.><삭제 2020.05.11.><신설 2022.10.07.>
- ②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신설 2018.04.03.>
- ③ 예외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신설 2018.04.03.>

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학년 대표 예외규정) <신설 2018.10.04.><개정 2022.10.07>

- 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 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학생회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② <삭제 2022.10.07.>
- 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 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④ <삭제 2022.10.07.>
- ⑤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는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의장)

- ① 의장은 공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학대회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

제18조 (소집) 공학대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둔다.

- ① 정기 회의는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 ③ 의장은 대회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8조의2 (공고) <신설 2018.04.03.>

- ①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장소, 일시, 소집 경위 및 과정,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의 제목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업무) <개정 2018.04.03.>

- ① 공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
-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
-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문구수정 2018.04.03.]
- 5.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 6.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 7. 기타 공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8. 산하기구의 신설과 폐지 <개정 2018.04.03.>
- ② 공학대회는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제20조 (요구권) 공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에 대해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개정 2018.04.03.>
- ② 공과대학 학생 총회의 소집 요구

제21조 (탄핵) <개정 2016.06.27>

- ① 공학대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 ② 탄핵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8.04.03.]
- **제22조 (개의 및 의결)** 공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 제56조를 따른다. <단서 신설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23조 (안건상정) <개정 2018.04.03.>

- ①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운영위원회가 개회 3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 ②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집행위원회 등이 개회전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8.04.03.>

제2절 운영위원회

제2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리지 못한 경우 회칙 개정을 제외한 그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하되, 학부/과/전공/반부학생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단"으로 명하고,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단 중 참석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정족수와 의결권은 1인에 준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26조 (의장)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27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전체 예산 결산을 심의 검토 조정하여 공학대회에 제출한다.
- ③ 과반수의 발의로 공학대회나 공과대학 학생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집행위원회의 업무 진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문구수정 2018.04.03.]
- ⑤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공학대회에 상정한다.
- ⑥ 기타 공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각 학부/과 학생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을 보고받고 집행위원회와 산하기구,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개정 2018.04.03.>
- ⑧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지원을 의결한다. <신설 2018.04.03.>

제28조 (소집) <개정 2018.04.03.>

-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9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및 집행위원회

제1절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제30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은 공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중 각 1인으로 한다.
-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제58조의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의 의장, 부의장을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제31조 (공과대학 학생회장)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공과대학 학생 총회 및 공학대회의 의장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3조 (임기)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9.22>

제34조 (선출) <문구수정 2014.10.29>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4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 ②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2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6장을 따른다.

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공학대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6조 (신분보장)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 제3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제40조에 의해 구성된 각 부서의 장의 임명 및 해임권
- <개정 2018.04.03.>
-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문구수정 2018.04.03.]
- ③ 공학대회의 의결 사항 중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④ 기타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 ⑤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18.04.03.>

제2절 집행위원회

제38조 (지위)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9조 (구성) <개정 2018.04.03.>

-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설 2018.04.03.>
- ② 집행위원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신설 2018.04.03.>
- ③ 집행위원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임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04.03.>
- 제40조 (부서 및 업무)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부 부서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이 때 부서의 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임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개정 2018.04.03.>
- **제40조의2 (공간 조정)** <신설 2019.09.10.>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 ① 집행위원회는 본회에 배정된 공간의 심사 권한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에 공간 조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공간 조정은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단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10.07.>
- ② 집행위원회는 공간 조정 해당 단위가 공간 조정 심사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까지 대표자 등에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③ 기타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공간조정세칙을 따른다.

제5장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41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구성 및 활동은 각학부/과/전공/반 학생회칙에 의거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42조 (학부/과/전공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문구수정 2018.04.03.]<개정 2022.10.07>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중에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43조 (학부/과/전공/반 대표) 학부/과/전공/반 대표는 각 학부/과/전공/반의학년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개정2017.03.30> <개정 2018.04.03.>

제6장 선거

제44조 (선거시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2학기 중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29. 2016.06.27.>

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문구수정 2017.09.29.>
- 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선관위는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학부/과/전공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1/4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개정 2018.10.04.><개정 2019.09.12.>
- ③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④ 선관위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를 접수o심의o처리한다. <개정 2017.09.29><개정 2019.09.12.>
- ⑤ <삭제 2019.09.12.>
- ⑥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선관위의 구성은 각각 그 회칙에 따른다.

제46조 (선거방법)

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② 자세한 사항은 제48조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7.09.29>

제47조 (보궐선거)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

- ① 학생회장단 모두가 유고일 때 해당 유고일로부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
- ②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세부 내용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8.04.03.>
- ③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0.07.>

제48조 (선거 세칙)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4.10.29. 2016.06.27.>

- ① 입후보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 ② 선거운동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09.12.>
- ③ 투표일은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하고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가 의결로 정하되, 기간은 본투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6.06.27><개정 2019.09.12.>
- ④ <삭제 2017.09.29>
- ⑤ 개표는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의 과반수 투표율을 달성할 시 진행한다. 단, 휴학생이 투표할 경우 분모와 분자에 셈을 더한다. (예: 재학생 3500, 휴학생 500명 中 재학생 2000명, 휴학생 250명이 투표한 경우의 투표율 = 100*(2000+250)/(3500+250)) <개정 2014.10.29> [문구수정 2016.06.27.]
- ⑥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단, 한 조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 ⑦ 이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7.09.29>
- ⑧ 선거시행세칙은 공학대회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2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신설 2017.09.29>
- ⑨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7.09.29>

제7장 재정

제49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50조 (경비와 관리)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학생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o집행한다. 집행위원회는 회비 배분금의 일부를 산하기구에 우선 할당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09.22> <개정 2018.04.03.>

제5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33조에 명기된 임기에 준하며, 회기는 제1기 12월 1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제2기는 제1기 이후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8.04.03.>

제52조 (예산)

- ① 매 회기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 조정하여 공학대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학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04.03.>
- ② 공학대회를 개회하지 못하여 예산안이 의결 받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③ 경비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일반 회계 관리의 관행에 준한다.

제53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집행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공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6.09.22>

제54조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 지원) [문구수정 2016.06.27.]

- ① 모든 지원은 집행위가 심의하고 운영위원회가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6.06.27.]
- ② 지원 대상은 공과대학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중적 기획 행사로 한다.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
- ③ <삭제 2018.04.03.>
- ④ <삭제 2018.04.03.>
- 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단위는 사업 1주전 사업계획서를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 실행 후 1주일 이내에 내역을 제출한다. 단, 내역으로 항목이 명시된 영수증 혹은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에 소명하여 인정될 경우 예산 지원을 집행한다.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

제8장 회칙 개정

제55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공학 대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
- ② 운영위원회의 발의
- ③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56조 (의결 공포) 발의시 공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된 회칙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9장 공과대학 학생회 준비위원회

제57조 (구성) <삭제 2018.04.03.>

제58조 (업무) <삭제 2018.04.03.>

제10장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 1. 정식 명칭은 '0000(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0000 (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 2.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약칭 '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갈음한다. [문구수정 2022.10.07.]
- 3. 산하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구성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로 호칭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③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④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제60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제61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의장이 구성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제11장 동아리 <전면개정 2018.04.03.> <개정 2020.05.11.>

제62조 (목적) 공과대학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대학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구수정 2017.03.30.]

제63조 (구성) 공과대학 동아리는 가등록 동아리와 정식등록 동아리로 구성된다. <신설

2017.03.30, 조문이동 2018.04.03.>

- 제64조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 <신설 2018.04.03.>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 ① 공과대학 동아리 관련 제반 사항의 조정을 위해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
- ②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
- 2.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집행위원 1인 <개정 2022.10.07>

- 3. 정식등록 동아리의 대표자
- ③ 가등록 동아리의 대표자는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발언권을 가진다.
- ④ 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회장단 중 1인이 당연직으로 한다.
- ⑤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1학기에 1회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65조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 <신설 2018.04.03.>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 1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의 등록, 권리, 활동심사,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2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제12장 산하기구 <신설 2018.04.03.> <개정 2019.09.12., 2020.05.11.> <개정 2022.10.07>

제1절 총칙

제66조 (구성)

- ① 산하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이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산하기구의 등록은 제8장에 따른 회칙 개정을 통해 한다.
- 1. <삭제 2019.09.12.>
- 2. <신설 2020.05.11.> <삭제 2022.10.07.>
- ③ 산하기구는 기구의 장 1인을 둔다.
- ④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매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산하기구의 장과 회계담당자를 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임기나 구성 등에 관하여 각 산하기구가 각 기구의 운영세칙(이하 '기구운영세칙')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에 따른 인선 현황을 확인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산하기구는 각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무공간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사무공간을 배정받은 산하기구가 회칙개정,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활동하지 않거나 당해 공간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산하기구를 대상으로 특별 공간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0.05.11.>

제67조 (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

- ① 운영위원회는 산하기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과대학학생회장의 발의와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수 있다.
- 1. 제70조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 2.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기구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기구 운영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 ② 공학대회는 산하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가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산하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
- 1. 공과대학 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 2. 공학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 3. 대학본부 및 공과대학본부, 기타 외부세력과 협력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제68조 (지위)

- ① 산하기구는 집행위원회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② 집행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발의하는 의안이 산하기구의 의견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산하기구 및 집행위원회는 각 이안(異案)을 운영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

제69조 (재정)

- ① 산하기구의 재원은 본 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집행위원회에서 유영하는 경비에서 지급하다.
- ② 산하기구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의 최종 결정권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제70조 (보고 및 감사)

- ① 산하기구의 장은 공학대회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활동 구성원 명단 등 기구 구성 현황
- 2. 예산안 및 결산안
-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 4. 사업 내역 및 사업 계획
- ② 산하기구의 장은 5월과 11월의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 전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집행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학대회나 운영위원회 3일 전까지 각산하기구의 장들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산하기구의 운영을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하기구는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필요한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71조 (기구운영세칙) 각 산하기구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단, 그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2절 <삭제 2019.09.12.>

제72조 <삭제 2019.09.12.>

제73조 <삭제 2019.09.12.>

제3절 <신설 2020.05.11.> <삭제 2022.10.07.>

제74조 <삭제 2022.10.07.>

제75조 <삭제 2022.10.07>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총학생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6.06.27>

부칙(2022.10.07.)

제4조 공과대학 학생회는 (가칭) 공학계열반 학생회칙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신설 2022.10.07>

제5조 공학계열반 학생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안은 공학계열 학생회 구성시행세칙을 따른다. <신설 2022.10.07>

제6조 부칙 제4조와 제5조의 효력은 공학계열반 학생회칙 제정과 동시에 말소되며, 이후 회칙개정을 통해 해당 부칙 및 세칙의 폐지를 논의한다. <신설 2022.10.07>

부칙(2018.04.03.) <삭제 2019.09.12.>